

2010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A study on the IT LAW TREND of the first half of 2010

2010. 7.

요 약 문

1. 제목

2010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사회 정보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의 노력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보화 법제도의 정비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제도이고, 이러한 법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고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법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는 그 특성상 보수성을 가진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된 기술이 고안되고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는 정보화 분야에서, 법제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법제가 선도적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정보화 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화의 영역에서는 법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분리되었던 영역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로는 정보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고, 이러한 괴리는 정보화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진단하는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정보화 법제도 사항을 그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보화 관련 판례 순으로 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먼저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국회에 접수된 법률 및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 순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관련 입법 및 그와 관련된 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는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정보화와 관련한 판결 및 결정례를 검토하여 그 요지를 기술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 정보화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 제공 서비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결정례 제공 서비스 및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법고를 DVD를 활용하였다.

4. 2010년 정보화 법제 전반 개관

정보화 추진에 있어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제이다. 둘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통해 정보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제로서 앞에서 언급한 두 범주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넷째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식재산권확립에 관한 법제이다.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권 확립은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분류를 기초로 다시 정보사회기반 조성 법제는 크게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를 위한 법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 법제는 지식사회 인프라의 질적 기반 확보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도 그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제는 다시 전자정부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제와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후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는 다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제와 정보통신윤리 관련 법제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보안 침해 방지 법제의 경우 이를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의 경우도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분류를 택하였다.

이상의 분류기준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정책추진 기반확립	정보통신 기반구축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대표적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 거래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방송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

이상의 분류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제·개정 공포된 법령은 59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25건, 2010년 국회에 접수되었던 법률은 56건, 정부에서 입법예고 된 법령은 36건 이었다.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제·개정 공포	11	0	1	24	4	13	1	5	0	59
국회 통과	0	0	1	4	4	9	0	7	0	25
의안 접수	0	2	2	11	4	23	0	2	12	56
입법 예고	2	1	0	20	6	5	2	0	0	36

각국의 법제도 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정보화 쟁점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과 그대로 일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보화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2010년 상반기 국외 정보화 법제도의 흐름은 1) 지속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정부 강화, 2) 정부 주도의 브로드밴드 구축, 3) 통합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정책 마련 및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합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단순히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하여 이를 모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또한,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스마트 폰의 출현으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자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단 2010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 역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국의 정보화 법제도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윤리	
국의 정보화법제도	4	4	3	23	0	7	0	7	5	53

2010년 상반기 대법원의 판결은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관련 사건이 3건,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이 4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건이 4건, 정보통신윤리 관련 1사건이 건으로 총 12건이 조사되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전자정부실현과 관련하여 1건이 조사되었다.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윤리	
대법원	0	0	0	0	3	0	4	4	1	12
헌법재판소	0	0	0	1	0	0	0	0	0	1

5.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의 시사점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공포되었다. 우선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 되어 공포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에서 기대한 것처럼 사법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를 주도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되었다. 전통적인 종이 문서에 기반한 현재 재판 실무에서 얼마나 paperless 재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통신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성범죄였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건이나 접수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접수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문제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이 접수된 것도 눈에 띈다.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행정심판청구를 활성화 하고,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여러 부처로 산재해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동 법안의 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소수의견(위헌의견)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방성과 양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매체를 상정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가 주어지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공정을 위해 마련되었던 공직선거법의 해석에도 이러한 태도가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하여 3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법을 제시한 판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불법 게시한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게 되었다. 다만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용이하게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방조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긍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부담을 줄여주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0년 상반기의 가장 큰 화두인 스마트폰과 관련한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아 아니라 손안의 정보통신기기이며 그 편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입법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불법음원의 유통, 저작물의 불법 무료 이용 등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정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채널을 통하여 유통이 승인된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스마트폰의 이른바 '탈옥'도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아이폰' 탈옥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어 향후 저작권법의 추이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오픈된 플랫폼과 다양한 모바일 OS에 의해 해킹 환경 또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감염, 금융 정보 유출 등 예상되는 정보보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IT융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정부 주도의 스마트폰 이용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스마트폰 활성화를 통한 IT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도모할 입법 논의를 2010년 하반기에는 기대해본다.

목 차

제 1 장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설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방법	2
가. 조사 방법	2
나. 분석 방법	2
제2절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5
1.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5
가. 제·개정 공포 법령	6
나. 국회통과 법률	8
다. 국회접수 법률안	10
라. 정부 입법예고 법령	13
2. 국외 정보화 법제도	15
3. 정보화 관련 판례	18
제3절 결어(2010년 상반기 정리 및 하반기 전망)	22

제 2 장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주제별 분류

제1절 제·개정 공포 법령	25
1. 정책추진기반확립	25

목 차

-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2010. 1. 7. 공포 및 시행)
- 나.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2. 4. 공포 및 시행)
- 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
- 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
- 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 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 사.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4. 13. 공포 및 시행)
-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 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6. 28. 공포 및 시행)
- 카.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9. 공포 및 시행)

2.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34

-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5. 11. 공포 및 시행)

3. 전자정부 실현 35

- 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 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
- 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25. 공포 및 시행)



목 차

- 아.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9. 공포 및 시행)
- 자.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 차.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 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3. 24. 공포 및 시행)
- 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4. 13. 공포 및 시행)
- 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
- 하.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 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 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 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 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 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 버.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25. 공포 및 시행)
- 서. 압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0. 5. 31. 공포, 2010. 6. 1. 시행)
- 어. 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6. 3. 공포 및 시행)
- 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 (2010. 6. 4. 공포 및 시행)

목 차

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0. 6. 11. 공포 및 시행)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63

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4. 20. 공포 및 시행)

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5. 6. 공포 및 시행)

5. 정보통신 산업육성 64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1. 26. 공포 및 시행)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1. 27. 공포, 2010. 2. 1. 시행)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27. 공포 및 시행)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

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자. 전기통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카.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8. 공포 및 시행)



목 차

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 6. 11. 공포, 2010. 12. 11. 시행)	
6.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77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3. 22. 공포, 2010. 3. 23. 시행)	
7. 정보보호 및 보안	77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3. 23. 공포 및 시행)	
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공포 및 시행)	
제2절 국회 통과 법률	80
1.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80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2. 전자정부 실현	82
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2. 26. 본 회의 의결)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010. 3. 31. 본회의 의결)	

목 차

- 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3.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88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 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 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 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4. 정보통신 산업육성 94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 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 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10. 2. 26. 국회본회의 의결)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6. 국회본회의 의결)
-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국회본회의 의결)
- 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국회 본회의 의결)



목 차

5. 정보보호 및 보안	103
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2. 본회의 의결)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18. 본회의 의결)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본회의 의결)	
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제3절 국회 접수 법률	 111
1. 정보통신기반 구축	111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강용석의원 대표 발의)	
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2.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113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9. 이정선의의원 대표발의)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 전자정부 실현	115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3. 11. 장제원의의원 대표발의)	

목 차

-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2010. 3. 12. 박선영의원 대표발의)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6.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6.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 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3. 22. 임동규의원 대표발의)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4.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
위원장 제안)
- 자.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2010. 6. 17.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1. 윤영
의원 대표발의)
- 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26**
 - 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29.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 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3. 전병현의원 대표발의)
 -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1.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 5. 정보통신 산업육성 128**
 -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18. 배은희의원 대표
발의)



목 차

- 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4.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9. 광정숙의원 대표발의)
- 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 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정부제안)
- 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 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 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9.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 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3. 전병현의원 대표발의)
- 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9.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안형환의원 대표발의)
- 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6.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3.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목 차

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6. 정보보호 및 보안 147

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0. 변재일, 전병헌의원 대표 발의)

7. 정보통신윤리 149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2.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이정선의의원 대표발의)

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2. 현경병의원 대표발의)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4. 조승수의의원 대표발의)

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5.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4. 29. 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5. 7. 최인기의의원 대표발의)

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5.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목 차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제4절 정부 입법예고 법령 159

1. 정책추진기반 확립 159

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 12. 행정안전부
공고)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2. 정보통신기반 구축 160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 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3. 전자정부 실현 162

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2. 3.
법무부 입법예고)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2. 18. 행정안전부 공고)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10. 2. 22. 행정안전부 공고)

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바.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사.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목 차

- 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3. 26. 국무총리 공고)
-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26. 행정안전부 공고)
- 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4. 9. 행정안전부 공고)
- 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9. 국토해양부 공고)
- 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보건복지부 공고)
- 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경찰청 공고)
- 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30. 법무부 공고)
- 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 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5. 24. 법무부 공고)
- 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6. 보건복지부 공고)
- 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05. 28. 외교 통상부 공고)
- 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06. 08. 행정안전부 공고)



목 차

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3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84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 22. 중소기업청 공고)

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4. 국토해양부 공고)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2. 국토해양부 공고)

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6. 환경부 공고)

마.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7. 법무부 공고)

바.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2010. 5. 17. 법무부 공고)

5. 정보통신 산업육성 194

가.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5. 지식경제부 공고)

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06. 0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목 차

6.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200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2.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0. 4. 16. 국무총리 공고)	
제5절 국외 정보화 법제도	202
1. 정책추진기반 확립	202
가. 모로코, 차세대 정보화전략 ‘디지털 모로코 2013’ 발표 (모로코상공 신기술부, 2009. 10. 10.)	
나. EU, ‘스마트·지속가능·통합’ 성장을 위한 2020 전략 발표 (EU, 2010. 3. 3.)	
다. 미국·영국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가속화 (Green IT Review, 2010. 5. 5.)	
라. EU, 미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EU, 2010. 5. 19.)	
2. 정보통신기반 구축	206
가. 영국, 정부 주도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 가속화 (영국BIS, 2010. 3. 4.)	
나. 미국,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계획’ 발표 (FCC, 2010. 3. 16.)	
다. 호주,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 정비 (호주 DBCDE, 2010. 3. 19.)	
라. 유럽, 5억 유로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 (egovmonitor, 2010. 6. 9.)	
3.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211
가. 영국, 교육 분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홈 액세스(Home Access)’ 정책 추진 (Becta, 2010. 1. 12.)	
나. 영국, 고령층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Get Digital’ 추진(PublicTechnology. net, 2010. 1.)	



목 차

다. 스코틀랜드, 텔레케어 추가 투자 계획 발표(The Scottish Government, 2010. 3. 28.)

4. 전자정부실현 214

가. 영국 런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포털 구축 (egovmonitor, 2010. 1. 7.)

나. 호주, 21세기형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전략 보고서 발표(Government 2.0 T/F, 2009. 12. 22.)

다. 영국, 공공 부문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 ICT 전략’ 발표(CabinetOffice, 2010. 1. 29.)

라. 영국, 정부 업무 능률화를 위한 ‘스마트 정부’ 계획안 발표(CabinetOffice, 2009. 12.)

마. 미국, IT 서비스들을 중앙 집중화하는 통합 계획 마련 (Nextgov, 2010. 2. 4.)

바. 캘리포니아, 정보자원 그린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State of California, 2010. 2. 9.)

사. 영국, 스마트폰 전용의 무료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highways, 2010. 2. 15.)

아. 핀란드, 만성질환자의 디지털 셀프케어(Digital Self Care) 시스템 구축 (e-Health Europe, 2010. 2. 15.)

자. 호주, GIS를 이용한 ‘비주얼플레이스(VisualPlace)’ 시범 운영(egovmonitor, 2010. 2. 5.)

차. 스페인, 전자정부 원스톱 서비스 실시 (epractice news, 2010. 2. 23.)

카. NHS Trust, 영국 전역에 영상회의 서비스 도입 (The Green IT Review, 2010. 2. 25.)

타. 싱가포르 - 2010년 정부 정보통신 부문 프로젝트 추진 계획 (IDA, 2010. 5. 12.)

목 차

- 파. 브라질, 정보공개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포털 구축 (egovmonitor, 2010. 3. 8.)
- 하. 불가리아, 공공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웹 플랫폼 개시 (eGovmonitor, 2010. 3. 16.)
- 거. 영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 본격 추진 (ComputerWeekly, 2010. 3. 22.)
- 너. 미국,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 (Informationweek, 2010. 4. 2.)
- 더. 필리핀,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선거 도입 계획 (FutureGov, 2010. 3. 29.)
- 러. 호주, 범국가 데이터센터 전략 실행으로 약 1조 370억 원의 절감 효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 머. 미국, 부처별 ‘열린 정부’ 중점 추진계획 발표 (White House, 2010. 4. 8.)
- 버. 아일랜드, 새로운 온라인 맵핑 서비스 ‘맵지니(MapGenie)’ 시작 (egovmonitor, 2010. 4. 7.)
- 서. 미국, 업무혁신 및 IT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 신설 (White House Executive Order, 2010. 4. 19.)
- 어. 세계은행, 경제개발 및 부흥을 위한 국가별 정보 공개 포털 오픈 (futuregov, 2010. 5. 11.)
- 저. 싱가포르, 모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용 통합 이메일(OneInbox) 부여 (channelnewsasia, 2010. 6. 15.)

5. 정보통신산업 육성 238

- 가. 미국, ICT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egovmonitor, 2010. 1. 8.)
- 나. 일본,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 추진 완료 (일본 경제산업성, 정보대항해 프로젝트, 2010. 2.)



목 차

- 다. 미국, IT 사업의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방 CIO 주재의 ‘TechStat’ 운영 (Informationweek, 2010. 2. 11.)
- 라. 영국, 디지털 경제 부흥을 위한 시맨틱 웹 연구에 3천만 파운드 투자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 마. 영국, 디지털 참여 활성화를 위한 Google, MS 등 민간기업 파트너십 체결 (Race Online 2012, 2010. 3. 28.)
- 바. 캐나다, 디지털 경제 전략 도출을 위한 국가회의 출범 (Canada News Centre, 2010. 5. 10.)
- 사. 이집트 정부,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한 ‘모바일앱스아카데미’ 출범 (The NextWeb, 2010. 6. 1.)

6. 정보보호 및 보안 245

- 가. 영국, 모바일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시제품 발표 (egovmonitor, 2010. 2. 11.)
- 나. 덴마크, 안전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일 디지털 서명 시행 (eGovmonitor, 2010. 2. 15.)
- 다. 싱가포르,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발표 (싱가포르 통신 개발청(IDA), 2010. 3.)
- 라. 미국,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지침 발표 (Govtech, 2010. 4. 22.)
- 마. 미국 미시시피 주, ‘데이터누설통지법’ 가결 (eSecurity Planet, 2010. 4. 16.)
- 바.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개정으로 백악관의 사이버 권한 증대 (GCN, 2010. 6. 2.)
- 사.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강조 (whitehouse, 2010. 5. 27.)

7. 정보통신윤리 253

- 가. 인도, 전화 및 인터넷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pcworld, 2010. 2.)

목 차

- 나. EU,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2010 개최 (Insafe, Europa, 2010. 2.)
- 다. 영국, 온라인 신용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운영 (silicon, 2010. 2. 17.)
- 라. 중국,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ChinaTechNews.com, 2010. 2. 24.)
- 마. 영국,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아동신고 버튼 요구 (CEOP, 2010. 3. 9.)

제6절 정보화 관련 판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258

1. 전자정부실현 258

- 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 59조제3호는 합헌이라고 본 사례(헌법재판소3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위헌소원/합헌])

2.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260

- 가. 직전 1억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나.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목 차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10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3.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262

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나.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

목 차

63409 [저작권침해금지]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권자의 복제방지조치 태만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손해배상(기)])

라.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손해배상(지)])

4. 정보보호 및 보안 267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 사안에서, 청구인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

목 차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2. 선고 2007두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다.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 정보통신윤리	271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대법원 2010.1.28. 선고 2010오1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참고문헌	273

목 차

〈 표 목 차 〉

〈표 1〉 정보화 관련 법제의 내용상 분류	4
〈표 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5
〈표 3〉 제·개정 공포 법령 목록	6
〈표 4〉 국회 통과 법률 목록	9
〈표 5〉 국회 접수 법률안 목록	10
〈표 6〉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	13
〈표 7〉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	15
〈표 8〉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18
〈표 9〉 정보화 관련 판례 목록	19

제 1 장**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제1절 서설****1. 연구의 목적**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사회 정보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의 노력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보화 법제도의 정비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제도이고, 이러한 법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고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법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는 그 특성상 보수성을 가진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된 기술이 고안되고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는 정보화 분야에서, 법제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법제가 선도적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정보화 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화의 영역에서는 법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분리되었던 영역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로는 정보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고, 이러한 괴리는 정보화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진단하는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정보화 법제도 관련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보화 관련 판례 순으로 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먼저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국회에 접수된 법률 및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 순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관련 입법 및 그와 관련된 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는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정보화와 관련한 판결 및 결정례를 망라하여 그 요지를 기술하였다.

3. 연구의 방법

가. 조사 방법

연구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 정보에 주로 의존하였다.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Google 및 전자신문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법고을(LX) 프로그램 및 대법원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 및 결정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나. 분석 방법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한 것처럼 정보화 법제 연구에 있어서도 분석의 틀은 필요하다. 분석의 틀은 사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분석 틀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 범주의 지향점과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관련 법제는 그

주무관청에 따른 분류, 개별 법률에 따른 분류 등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동일한 범주로 보고 그에 따른 분류를 합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이념에 따른 분류를 통해 법제의 내용상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이념과의 합치 여부를 판별하여 앞으로 정보화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경우 정보화 추진에 있어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¹⁾. 첫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제이다. 둘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통해 정보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제로서 앞에서 언급한 두 범주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넷째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식재산권확립에 관한 법제이다.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권 확립은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분류를 기초로 다시 정보사회기반 조성 법제는 크게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를 위한 법제가 그것이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와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는 그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의 경우 정보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총론적 지위를 가지는데 반해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 법제는 지식사회 인프라의 질적 기반 확보의 측면에서 정보화 소외 계층도 그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식·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제는 다시 전자정부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제와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후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경우 이를 전자정부 관련 법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는 다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1)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2권 제2호(2007), 173면 이하 참조.

법제와 정보통신윤리 관련 법제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보안 침해 방지 법제의 경우 이를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의 경우도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분류를 택하였다.

첨언하자면 이러한 분류의 체계는 사고의 정리를 위해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분류 자체가 서로 관련되는 측면이 있어(예컨대 ‘정보사회지식재산권의 확립’은 ‘정보사회의 역기능’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할 여지도 있다) 개념의 정립이 간단명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의 사안이 어느 분류에 포섭될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둘 이상의 분류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경우 최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에 분류하였음을 알려둔다.

〈표 1〉 정보화 관련 법제의 내용상 분류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 보고서는 2010년 상반기 국내 정보화 법제도 입법 및 판례를 상기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현황을 살피고, 차후 보완해야 할 점을 소개하였다. 마찬가지로 국외 정보화 법제도 역시 위의 분류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향후 법제 정비 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2절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위에서 소개한 정보화 관련 법제 분류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제·개정 공포된 법령은 59 건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25건, 2010년 국회에 접수되었던 법률은 56건, 정부에서 입법예고 된 법령은 36건 이었다.

〈표 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제·개정 공포	11	0	1	24	4	13	1	5	0	59
국회 통과	0	0	1	4	4	9	0	7	0	25
의안 접수	0	2	2	11	4	23	0	2	12	56
입법 예고	2	1	0	20	6	5	2	0	0	36

아래에서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제·개정 공포 법령

2010년 상반기 제·개정 공포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총 59건으로 아래 표와 같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부문에서 11건, 정보통신기반 확보 부문에서 1건, 전자정부 실현 부문에서 24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부문에서 4건, 정보통신산업 육성 부문에서 13건, 정보사회 지적재산권 확립 부문에서 1건, 정보보호 및 보안 부문에서 5건이 공포되었다.

〈표 3〉 제·개정 공포 법령 목록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정책추진 기반확립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2010. 1. 7. 공포 및 시행) 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2. 4. 공포 및 시행) 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 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 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0. 4. 13. 공포 및 시행)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6. 28. 공포 및 시행) 11.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9. 공포 및 시행)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5. 11. 공포 및 시행)
전자정부실현	1.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3.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 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25. 공포 및 시행) 8.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9. 공포 및 시행) 9.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10.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3. 24. 공포 및 시행) 1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4. 13. 공포 및 시행)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 14.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1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16.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1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19.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20.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25. 공포 및 시행) 21.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0. 5. 31. 공포, 2010. 6. 1. 시행) 22. 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6. 3. 공포 및 시행) 2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 (2010. 6. 4. 공포 및 시행) 24.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0. 6. 11. 공포 및 시행)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4. 20. 공포 및 시행) 4.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5. 6. 공포 및 시행)
정보통신산업 육성	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1. 26. 공포 및 시행)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1. 27. 공포, 2010. 2. 1. 시행)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27. 공포 및 시행)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공포 및 시행 8.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9. 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11.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8. 공포 및 시행)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 6. 11. 공포, 2010. 12. 11. 시행)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3. 22. 공포, 2010. 3. 23. 시행)
정보보호 및 보안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3. 23. 공포 및 시행)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공포 및 시행)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공포되었다. 우선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 되어 공포되었으며, 사법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를 주도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통신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나. 국회통과 법률

2010년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의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부문에서 1건, 전자정부 실현 부문에서 4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부문에서 4건, 정보통신 산업 육성 부문에서 9건, 정보보호 및 보안 부문에서 7건으로 총 25건에 지나지 않는다.

〈표 4〉 국회통과 법률 목록

분류	국회 통과 법률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전자정부실현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31. 본회의 의결) 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4.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본회의 의결)
정보통신산업 육성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본회의 의결)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7.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본회의 의결) 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5. 19. 본회의 의결)
정보보호 및 보안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2. 본회의 의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18. 본회의 의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본회의 의결)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본회의 의결)

국회통과 법률들은 대부분 공포되었으므로 앞에서 소개한 2010년 공포된 법령 소개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덧붙일 내용은 없다.

다. 국회접수 법률안

2010년 상반기에 국회에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총 5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반 구축 부문이 2건,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부문이 2건, 전자정부 실현 부문이 11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부문이 4건, 정보통신 산업육성 부문이 23건, 정보보호 및 보안 부문이 2건, 정보통신윤리 부문이 12건 접수되었다.

〈표 5〉 국회접수 법률안 목록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정보통신 기반구축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강용석의원 대표발의)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9. 이정선의의원 대표발의)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전자정부실현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장제원의의원 대표발의)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3. 12. 박선영의원 대표발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6. 이한성의의원 대표발의)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6.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2. 임동규의원 대표발의)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4. 김태원의의원 대표발의) 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9.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2010. 6. 17. 박영선의의원 대표발의)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1. 윤영의원 대표발의)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29.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3.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1.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6.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18.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4.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5.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9.곽정숙의원 대표발의)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현의원 대표발의)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현의원 대표발의)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정부제안)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9.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3.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9.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안형환의원 대표발의)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2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6.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3.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9. 성윤환의원 대표발의)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정보보호 및 보안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0. 변재일,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윤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2.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5.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이정선의의원 대표발의)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04. 12. 현경병의원 대표발의)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4.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5.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9.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4. 29. 이성현의원 대표발의) 10.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5. 7.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5.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된 법안의 특징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성범죄였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건이나 접수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접수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문제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이 접수된 것도 눈에 띈다.

라. 정부 입법예고 법령

2010년 하반기 정부의 입법 예고 법령은 총 건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추진기반 확립 관련 입법 예고는 2건, 정보통신 접근기반구축은 1건, 전자정부 실현에 기여하는 입법 예고는 20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과 관련된 입법예고는 6건, 정보통신 산업육성은 5건,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2건이었다.

〈표 6〉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

분류	정부 입법예고 법령
정책추진 기반확립	1.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 12. 행정안전부 공고)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정보통신 기반구축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 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전자정부실현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2. 3. 법무부 입법예고) 2.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2. 18. 행정안전부 공고)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2. 22. 행정안전부 공고)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5.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7.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3. 26. 국무총리 공고)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26. 행정안전부 공고)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4. 9. 행정안전부 공고)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9. 국토해양부 공고)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보건복지부 공고) 1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경찰청 공고)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30. 법무부 공고)

분류	정부 입법예고 법령
	1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1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5. 24. 법무부 공고)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6. 보건복지부 공고) 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8. 행정안전부 공고) 2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30. 농림수산물부 공고)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0. 1. 22. 중소기업청 공고) 2.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4. 국토해양부 공고)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2. 국토해양부 공고)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6. 환경부 공고) 5.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7. 법무부 공고) 6.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7. 법무부 공고)
정보통신산업 육성	1.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5. 지식경제부 공고)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5.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2.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0. 4. 16. 국무총리 공고)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행정심판청구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여러 부처로 산재해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동 법안의 처리가 기대된다.

2. 국외 정보화 법제도

각국의 법제도 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정보화 쟁점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과 그대로 일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보화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2010년 상반기 국외 정보화 법제도의 큰 흐름은 1) 지속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한 전자정부 강화, 2) 정부 주도의 브로드밴드 구축, 3) 통합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정책 마련 및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스마트 폰의 출현으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자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단 2010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 역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표 7〉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책추진 기반확립	1. 모로코, 차세대 정보화전략 ‘디지털 모로코 2013’ 발표(모로코상공신기술부, 2009. 10. 10.) 2. EU, ‘스마트·지속가능·통합’ 성장을 위한 2020 전략 발표(EU, 2010. 3. 3.) 3. 미국·영국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가속화(Green IT Review, 2010. 5. 5.) 4. EU, 미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EU, 2010. 5. 19.)
정보통신 기반구축	1. 영국, 정부 주도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 가속화(영국BIS, 2010. 3. 4.) 2. 미국,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계획’ 발표 (FCC, 2010. 3. 16.) 3. 호주,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 정비 (호주 DBCDE, 2010. 3. 19.) 4. 유럽, 5억 유로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egovmonitor, 2010. 6. 9.)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국, 교육 분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홈 액세스(Home Access)’ 정책 추진 (Becta, 2010. 1. 12.) 2. 영국, 고령층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Get Digital’ 추진 (PublicTechnology. net, 2010. 1.) 3. 스코틀랜드, 텔레케어 추가 투자 계획 발표 (The Scottish Government, 2010. 3. 28.)
전자정부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국 런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포털 구축 (egovmonitor, 2010. 1. 7.) 2. 호주, 21세기형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전략 보고서 발표 (Government 2.0 T/F, 2009. 12. 22.) 3. 영국, 공공 부문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 ICT 전략’ 발표 (CabinetOffice, 2010. 1. 29.) 4. 영국, 정부 업무 능률화를 위한 ‘스마트 정부’ 계획안 발표 (CabinetOffice, 2009. 12.) 5. 미국, IT 서비스들을 중앙 집중화하는 통합 계획 마련 (Nextgov, 2010. 2. 4.) 6. 캘리포니아, 정보자원 그린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State of California, 2010. 2. 9.) 7. 영국, 스마트폰 전용의 무료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highways, 2010. 2. 15.) 8. 핀란드, 만성질환자의 디지털 셀프케어(Digital Self Care) 시스템 구축 (e-Health Europe, 2010. 2. 15.) 9. 호주, GIS를 이용한 ‘비주얼플레이스(VisualPlace)’ 시범 운영 (egovmonitor, 2010. 2. 5.) 10. 스페인, 전자정부 원스톱 서비스 실시 (epractice news, 2010. 2. 23.) 11. NHS Trust, 영국 전역에 영상회의 서비스 도입(The Green IT Review, 2010. 2. 25.) 12. 싱가포르 - 2010년 정부 정보통신 부문 프로젝트 추진 계획 (IDA, 2010. 5. 12.) 13. 브라질, 정보공개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포털 구축 (egovmonitor, 2010. 3. 8.) 14. 불가리아, 공공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웹 플랫폼 개시 (eGovmonitor, 2010. 3. 16.) 15. 영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 본격 추진 (ComputerWeekly, 2010. 3. 22.)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16. 미국,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 (Informationweek, 2010. 4. 2.) 17. 필리핀,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선거 도입 계획 (FutureGov, 2010. 3. 29.) 18. 호주, 범국가 데이터센터 전략 실행으로 약 1조 370억 원의 절감 효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19. 미국, 부처별 '열린 정부' 중점 추진계획 발표(White House, 2010. 4. 8.) 20. 아일랜드, 새로운 온라인 맵핑 서비스 '맵지니(MapGenie)' 시작 (egovmonitor, 2010. 4. 7.) 21. 미국, 업무혁신 및 IT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 신설 (White House Executive Order, 2010. 4. 19.) 22. 세계은행, 경제개발 및 부흥을 위한 국가별 정보 공개 포털 오픈 (futuregov, 2010. 5. 11.) 23. 싱가포르, 모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용 통합 이메일(OneInbox) 부여 (channelnewsasia, 2010. 6. 15.)
정보통신산업 육성	1. 미국, ICT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egovmonitor, 2010. 1. 8.) 2. 일본,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 추진 완료 (일본 경제산업성, 정보대항해프로젝트, 2010. 2.) 3. 미국, IT 사업의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방 CIO 주재의 'TechStat' 운영 (Informationweek, 2010. 2. 11.) 4. 영국, 디지털 경제 부흥을 위한 시맨틱 웹 연구에 3천만 파운드 투자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5. 영국, 디지털 참여 활성화를 위한 Google, MS 등 민간기업 파트너십 체결 (Race Online 2012, 2010. 3. 28) 6. 캐나다, 디지털 경제 전략 도출을 위한 국가회의 출범 (Canada News Centre, 2010. 5. 10.) 7. 이집트 정부,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한 '모바일앱스아카데미' 출범 (The NextWeb, 2010. 6. 1.)
정보보호 및 보안	1. 영국, 모바일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시제품 발표 (egovmonitor, 2010. 2. 11.) 2. 덴마크, 안전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일 디지털 서명 시행 (eGovmonitor, 2010. 2. 15.) 3. 싱가포르,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발표 (싱가포르 통신개발청(IDA), 2010. 3.) 4. 미국,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지침 발표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Govtech, 2010. 4. 22.) 5. 미국 미시시피 주, '데이터누설통지법' 가결 (eSecurity Planet, 2010. 4. 16.) 6.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개정으로 백악관의 사이버 권한 증대 (GCN, 2010. 6. 2.) 7.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강조 (whitehouse, 2010. 5. 27.)
정보통신윤리	1. 인도, 전화 및 인터넷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pcworld, 2010. 2.) 2. EU,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2010 개최 (Insafe, Europa, 2010. 2.) 3. 영국, 온라인 신용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운영 (silicon, 2010. 2. 17.) 4. 중국,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ChinaTechNews.com, 2010. 2. 24.) 5. 영국,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아동신고 버튼 요구 (CEOP, 2010. 3. 9.)

3. 정보화 관련 판례

2010년 상반기 정보화 관련 판례는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 거래 확산에서 1건, 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1건, 정보통신윤리에서 1건이 조사되었다.

〈표 8〉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대법원	0	0	0	0	3	0	4	4	1	12
헌법재판소	0	0	0	1	0	0	0	0	0	1

〈표 9〉 정보화 관련 판례 목록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전자정부실현	1.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 59조제3호는 합헌이라고 본 사례(헌법재판소3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위헌소원/합헌])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p>1. 직전 1억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p> <p>2.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p> <p>3.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10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p>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p> <p>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 63409 [저작권침해금지])</p> <p>3.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방지조치 태만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손해배상(기)])</p> <p>4.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손해배상(지)])</p>
정보보호 및 보안	<p>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 사안에서, 청구인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 <p>2.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2. 선고 2007두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p>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3.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통신윤리	1.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 를 인용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10오1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소수의견(위헌의견)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방성과 양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매체를 상정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가 주어지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공정을 위해 마련되었던 공직선거법의 해석에도 이러한 태도가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하여 3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법을 실시한 판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불법 게시한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게 되었다. 다만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용이하게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방조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긍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부담을 줄여주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결어(2010년 상반기 정리 및 하반기 전망)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공포되었다. 우선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 되어 공포되었으며, 사법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를 주도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통신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성범죄였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건이나 접수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접수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문제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이 접수된 것도 눈에 띈다.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행정심판청구를 활성화 하고,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여러 부처로 산재해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0년 하반기의 지식 재산기본법의 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2010년 상반기에는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소수의견(위헌의견)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방성과 양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매체를 상정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가 주어지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공정을 위해 마련되었던 공직선거법의 해석에도 이러한 태도가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하여 3개의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법을 실시한 판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터넷 링크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불법 게시한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게 되었다. 다만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용이하게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방조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긍정될 수 있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부담을 줄여주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0년 상반기의 가장 큰 화두인 스마트폰과 관련한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니라 손안의 정보통신기기이며 그 편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입법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불법음원의 유통, 저작물의 불법 무료이용 등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정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채널을 통하여 유통이 승인된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스마트폰의 이른바 '탈옥'도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아이폰' 탈옥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어 향후 저작권법의 추이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오픈된 플랫폼과 다양한 모바일 OS에 의해 해킹 환경 또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감염, 금융 정보 유출 등 예상되는 정보보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IT융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정부 주도의 스마트폰 이용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스마트폰 활성화를 통한 IT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도모할 입법 논의를 2010년 하반기에는 기대해본다.

제 2 장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주제별 분류

제1절 제·개정 공포 법령

1. 정책추진기반확립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2010. 1. 7.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체제 구축(영 제2조제1호 및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공간정보의 관리(영 제5조 및 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관련 정책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영 제10조 및 제12조)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통하여 자료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자료의 제출 및 관리(영 제13조 및 제14조)
 -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초자료인 부동산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련 세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2. 4.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법률 제10008호, 2010.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

○ 제정이유

-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정비,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활성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정보화 관련 표준화 정책 수립, 첨단 상용기술의 우선적용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방 분야의 전력증강은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정부는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4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우선적 고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한 소요예산·성과 등과 관련된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 군의 정보화 및 정보자원관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력의 교류,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 기술에 관한 공동 시험 등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7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고,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

○ 개정이유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온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온천의 요건을 강화함(법 제2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 온천개발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 삭제, 법 제10조, 법 제10조의2 신설)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과정의 복잡한 규제 등으로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천개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의제처리로 신속한 온천개발이 가능하고 온천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온천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요건 보완(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 제21조제4항)
 -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굴착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온천공 굴착 후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지표수 유입, 시설물 부식 등 지하의 환경오염이

발생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 계획적인 온천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여 국토의 난개발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 구축(법 제24조의2 신설)
-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온천수 수위강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온천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천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천종사자교육 단일화(법 제26조)
- 현행 온천종사자 교육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으로 이원화되어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이중으로 받는 등 온천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
 - 온천종사자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포함한 온천법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온천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 제26조의7 삭제).

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위탁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법 제15조제5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법 제25조제2항 신설).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법 제30조제2항 신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개정이유

-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4. 13.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하도록 하고,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1호, 2009. 8. 5.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하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법 제11조제4항).
-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이 법에서 규정함(법 제16조제1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제3항 신설).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법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신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4 신설).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77조의4 신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84조).

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6. 28.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확정시기를 감안하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등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5. 1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함(법 제21조제3항).
- 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1조제4항 신설, 법 제21조제6항).
-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함(법 제21조제5항 신설).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록 함(법 제26조제6항).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3. 전자정부실현

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이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비후보자가 착용할 수 있는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지물의 규격은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로 함(제26조의2제8항 신설).나. 다음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제한·금지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함(제26조의2제9항·제45조의3제4항 신설).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다.
- 예비후보자는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어깨띠·표지물, 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제10항·제26조의

3제2항 신설).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 청각·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정규의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 5일까지 구·시·군의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선거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도록 함(제31조제3항·제4항 신설)
-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 또는 금액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제33조)
 - 어깨띠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의 규격(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옷 : 선거사무원의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 마스크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시 참석 임·직원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범위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제47조제5항 신설, 제50조제3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한국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 그 밖에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 행위 중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급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50조제4항 신설).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료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1만원 이하로,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로 정함(제50조제6항)
 -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의 지급기준액은 선거사무원에 준하여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로 함(제59조제1항제5호).
 -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함(제90조·제103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도록 함(제71조제3항)
 - 시·도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해당 시·도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거나 그 사인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26조제5항 신설).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 교부방법은 먼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다음으로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순서로 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동시 실시할 경우 중앙위원회가 그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33조제1항 신설).
 -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이 하도록 함(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신설).
 - 선거재해 보상금의 청구를 재해를 받은 날부터 180일(장제보상과 유족보상은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46조의 6제3항·5항부터 제7항까지).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하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277조의2제5항의 “중대한 과실”로 보도록 함
-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근무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도록 함 (부칙 제2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자치구·시·군을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김해시·거창군”으로 정함(부칙 제3조)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재심청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인용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심의위원회가 그 운영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

-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간을 확대함 (제20조제2항).

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2010. 1. 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개표가 끝난 후 투표지 봉인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운영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 투표지봉인 절차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규정과 같이 개표를 마친 후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를 관할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함(제25조제1항).

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없는 신속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형사절차 및 법령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4조)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의무(법 제5조)
 -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시스템상의 유통표준에 따르며, 해당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법 제6조)
 -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형사사법정보 이용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는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대국민 통합서비스의 제공(법 제7조)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
 - 그동안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형사사법 관련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기능을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독립적인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법 제8조)
 - 시스템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고유의 책임 아래에 독자적으로 생성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형사사법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중립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함.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요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둔.
-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처벌(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형사사법업무 또는 시스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 누설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함.

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 제정이유

-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의 대상 사건(법 제3조)
 -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서면심리주의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게 정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중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전자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법 제4조)
 -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하는 피의자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자약식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전자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의자의 동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제출(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탄원서 등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약식명령 등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 등은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 약식명령 등의 송달(법 제8조 및 제9조) 법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올려진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등의 제출(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및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법 제11조)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형의 집행 지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지휘하도록 함.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

○ 제정이유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의 관장(법 제4조)
 - 검찰총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총괄하도록 하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범죄(법 제5조)
 -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함.
- 적용대상자(법 제5조 및 제6조)
 -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확정된 사람,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한정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법 제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교도관 등이 집행하도록 하되,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법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법 제11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등을 명시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법 제13조)
 - 수형인 등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범죄로 변경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및 처벌(법 제15조 및 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2010. 1.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1. 2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대상을 축소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선청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고대상의 축소(제3조, 제7조)
 -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6.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 되었으므로 종전 보고대상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구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이 가능하였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로 국한함.
- 보고서 첨부서류 생략(제7조)
 -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공소장, 불기소장, 사건송치서, 판결문 사본을 생략함.
- 보고방법 등 개선(제4조, 제9조)
 - 보고방법 중 시대성이 떨어지는 텔레타이프를 삭제하고, 전산보고시스템을 추가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시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일반적인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함.

자.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 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자등록·철회 등(제3조)
 -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고,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방법(제4조)
 - 등록사용자로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한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는 청구서 또는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의 접수 등(제7조)
 -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부분 제출의무는 면제됨.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 접수정보를 당사자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함.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제9조)
 -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무관등은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
- 전자적 송달 등(제10조)
 - 사무관등은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한 다음 등재사실을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알려야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

차.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2. 26. 공포, 2010. 3.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3. 24.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적용범위(법 제3조)
 -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법 제5조)
 -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법 제6조 및 제8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접수(법 제9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법 제10조)
 -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함.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법 제11조)
 -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4. 13.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급전표, 환급·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

○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항 신설).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횡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법 제5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법 제9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법 제9조제3항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및 제14조, 법 제14조의2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하.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타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대리인회원, 법무사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제4조제1항)
- 특허사건의 주된 피고인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제4조제3항, 제15조, 제19조)
- 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도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제3조, 제18조제2항)
- 사용자등록은 철회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철회 가능(제6조)
- 등록사용자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인적사항·청구취지 등 일정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사항은 문서파일을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제10조제1항)
-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제12조)
- 전자소송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글자크기, 줄간격, 분량, 여백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제13조제1항)
-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모두 전자파일화하여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함(제17조)
- 전자소송에 의한 절차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는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은 문서는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음 (제18조제6항)
-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송달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변기간의 계산에 특례를 둠(제20조)
-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 경우 등에는 자기디스크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문자 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화면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음성·영상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음성·영상을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함(제25조 및 제26조)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 심급사이의 기록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함(제30조)

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2010. 4. 26.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부칙에 따라 법의 소송절차별 또는 법원별 적용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절차에 대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음(제2조제1항)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이외의 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의 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모든 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든 사건
2013. 5. 1.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모든 사건

- 각 적용일 이후에 최초로 접수된 사건에 한하며, 상소사건은 제1심 접수시를 기준으로 함(제2조제2항)

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 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 공무원의 전자화문서 작성 및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의무(제2조)
 -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관
- 검사,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접수방법 및 법적효과(제3조)
 -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제출 가능
 -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제출효과 발생
-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방법, 피고인의 약식명령등본

열람·출력방법(제4조)

- 약식명령청구의 접수사실 등을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
-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출력 가능
-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통지(제5조)
 - 약식명령과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에게 송달·통지
- 종이문서 출력에 의한 약식명령 등의 송달(제6조)
 - 약식명령 등이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약식명령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
- 정식재판청구 방식(제7조)
 - 정식재판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
-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시 검사에 대한 전자적 통지 및 문서송부(제8조)
 -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
- 전자문서의 열람·출력 방법, 수수료(제11조)
 -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열람 가능

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2010. 4. 29. 공포, 2010. 5. 1. 시행)

○ 제정이유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영 제2조)
 -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시함.

-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영 제3조)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원활한 전자적 유통을 위하여 송신하는 형사사법정보가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해당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정보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송신·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영 제4조)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원활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하도록 하고,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영 제6조)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설치하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의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 개정이유

-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 생산 의무화(영 제19조제2항 신설)
 -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함.
-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확보(영 제35조제6항 및 제44조제6항 신설)
 -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하여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 해당 전자기록물의 인계 절차 종료 후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이관받은 기관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
-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영 제58조제4항 신설)
 -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폐지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기록물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 대통령령 제1998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도록 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함.

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

○ 개정이유

-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버.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5. 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되는 정도가 위반행위별로 각각 상이하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0. 5. 31. 공포, 2010. 6. 1. 시행)

○ 개정이유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어. 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 6. 3.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는,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등록세 등의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인은 이 수령증을 다른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수령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 간 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소의 업무처리 간소화 및 신청인의 등기신청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공장저당법」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수령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등을 기재함(제130조의3 신설).
-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제1항의 목록”으로 함(제134조제4항 및 제145조).

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 (2010. 6. 4.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0. 6. 1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절차를 정하고,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 신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복잡한 자동차 등록사무신청의 특성 상 등록사무 대행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무방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등록사무 대행자의 사용자 등록·해지 절차, 첨부서류 및 등록 갱신 절차 등 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 등록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용본거지 등의 서류를 소유자 동의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토록하고,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 시·도간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제31조)
 -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등 변경등록 업무 처리가 번거로움.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 작성 및 구조변경사항의 별도 기재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함.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 개정이유

-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 의3 신설).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함(법 제21조의2 신설).
-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법 제22조).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4. 20.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0. 5. 6.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1. 26.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9786호, 2009.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 및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진입 허용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업 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연장 명령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그 허용범위·방법 등의 시행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종전에 금지되었던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으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제출 자료와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진입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문 및 방송의 겸영에 따른 여론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문 구독률 산정의 세부기준(영 제4조제4항 신설)
 - 법률에서 구독률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문은 계속하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진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은 전체가구 수 대비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
- 신문 of 방송진입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디어시장에서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주식 또는 지분의 상호취득 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영 제4조제5항)
 - 기존에 금지되었던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상호취득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위성방송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주식 또는 지분의 상호취득 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함.
 - 지역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상호진입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보도·홈쇼핑)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의 법률상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의 범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되, 허가·승인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 연장으로 경영계획에 따른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 및 재허가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효력이 기대됨.
- 방송연장 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영 제17조)
 - 법률에서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대상 사업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방송연장 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한 방송연장 명령의 내용을 정하고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내용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함.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청자의 시청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구성 및 운영(영 제21조의4 신설)
 -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신설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관련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방송에서 여론 다양성 보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기준(영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 법률에서 새롭게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간접광고는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에만 허용하는 등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을 정함.
 -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도입으로 방송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1. 27. 공포, 2010. 2. 1. 시행)

○ 개정이유

-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영 제12조)
 -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편집·저장·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2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규제의 일몰조항을 두려는 것임(법 제49조의2 신설).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의 발권 데이터를 정확히 집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전국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규정만 있을 뿐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가입의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영화상영의 신고를 면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 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 제정이유

-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법 제2조)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법 제3조 및 제4조)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 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및 제11조)
 -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술,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송통신 진흥(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 방송통신 재난관리(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재해·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

○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허가제도 개선 등(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법 제28조제2항)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법 제38조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법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
 - 통신망의 확충·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10. 6. 8.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 6. 11. 공포, 2010. 12. 11. 시행)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법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개편(법 제7조)
 -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법 제9조)
 -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법 제2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법 제22조)
 -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법 제23조)
 -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법 제24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6.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3. 22. 공포, 2010. 3. 2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품 제조 등의 수탁기업이 임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 수탁기업의 저작권 관련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7개에서 56개로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7. 정보보호 및 보안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1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 3. 22.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3. 23.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9643호, 2009. 5. 8.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정하는 한편,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의 범위를 변경,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10. 4. 1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화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2절 국회 통과 법률

1.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단계적 시행규정이 많아 아직도 차별의 예외가 다수 현존하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2. 전자정부 실현

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2. 26.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안 제5조)
 -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6조 및 제8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접수(안 제9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안 제10조)
 -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화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함.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1조)
 -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31.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신설).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횡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제1항).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제3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안 제9조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비시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전자출원제도 도입
 - 현행 규정은 출원인이 문서, 사진 등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문서를 간소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효율성의 향상 및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원공고제도 폐지
 - 출원공고는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출원공고제도 시행 이후 이의신청이 1건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품종보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와 관련된 이의신청,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등 관련 조항도 폐지함.
 -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
 - 현행 규정은 거절사정 및 품종보호 무효 결정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의 경우도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함.

- 품종보호권이 취소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취소심판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
-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 제도 개선
 -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종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자위원회가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 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제1항).
- “장기등” 중 “각막”을 “안구”로 규정하고, “장기증희망자”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살아있는 정신질환자와 지적(知的)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장기등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안 제15조).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안 제16조제3항).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 뇌사 및 사망한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유·가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3항).

-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단서).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는 책임과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보칙,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3.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며,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lease), 프랜차이즈(franchise), 팩토링(factoring)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임.

○ 주요내용

-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 도입 등(안 제46조 및 제151조)
 -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의 정의 중 ‘객의 집래’와 같이 의미 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상행위로 열거하고, 공중접객업의 정의를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함.
 -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에 이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공중접객업의 개념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 격지자(隔地者)간 청약에 도달주의 도입(현행 제52조 삭제)
 - 현재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발신주의(發信主義)가 적용되고,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에 따라 도달주의(到達主義)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 법 제52조를 삭제하여 격지자간의 청약에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여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동일하게 함.
 -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민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비상인(非商人)에 대한 금전 대여 시 상인의 『상법』상 법정이자청구권 인정(안 제55조)
 - 현행 규정은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 상인 간에는 물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점(支店) 거래 시 채무이행의 장소(안 제56조)
 - 현재 지점에서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 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어 지참채무(持參債務)의 일반원칙 및 채권자의 현 영업소를 채무이행 장소로 하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함.
 - 지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되는 경우를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한정함으로써 『민법』과의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介入權)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안 제107조)
 - 현재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의 대상이 물건의 매매로 한정되어 널리 이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가증권의 매매에도 위탁매매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 부여(안 제131조)
 - 현재 운송에 관한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운송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인정(안 제135조)
- 이 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그 특칙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의 논란이 있음.
 - 운송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송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둘러싼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분쟁을 조절하여 운송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 완화 등(안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 연혁적 사유에서 비롯된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비현실적 엄격책임은 오늘날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객’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다른 업종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완화하고, ‘객’을 ‘고객’으로 개정함.
 -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여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구체화(안 제12장 신설)
- 현재 금융리스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체화 함.
 -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법률관계가 합리적으로 규율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업(加盟業)의 법률관계 구체화(안 제13장 신설)

- 현재 가맹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加盟業者) 경업금지 의무와 가맹상(加盟商)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양도를 하도록 하며,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 방지 및 가맹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화(안 제14장 신설)
- 현재 채권매입업(債權買入業)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영업채권 및 채권매입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권매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채권매입업자도 제3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채권매입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8.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최근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 현재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산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특정위험부위(SRM) 12개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쇠고기 이력관리의 이원화 및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수입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사고 발생시 완벽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더불어 현행법 제명의 “추적”이라는 단어가 소 또는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예단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법 제명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 법률 명칭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명 및 제2조).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13조).
-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쇠고기의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라 한다)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26조).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33조)

4. 정보통신 산업육성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은 2009년 4월 현재 전국 314개 영화관의 2,124개 스크린 중 98%인 2,086개의 스크린이 가입되어 있는 시스템임.
- 동 시스템은 극장 측의 발권데이터를 받은 전송사업자가 영진위로 실시간(약 1분~1분 30초 소요) 전송하고 있으며, 일/주/월 단위로 전송사업자와 집계데이터를 비교·검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통합전산망에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극장 측의 부정확한 자료 전송 또는 누락 발생으로 데이터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당초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었던 영화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입장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극장주와 제작자간의 입장료 수익 배분 논란과 영화진흥기금 등의 탈세 의혹은 물론 극장 측 발권 시스템이나 전송사업자의 전송시스템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통합전산망에의 의무 가입을 통해 영화배급사들이 배급영화 관람객 수를 직접 파악하는 등의 불필요한 유통 과정상의 비용을 줄임으로서 영화의 수익성을 높이고, 극장주와 제작자간의 입장료 수익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배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며, 정확한 영화산업 통계치의 확보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영화제작사 또는 투자사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3 신설).

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5. 국회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10. 2. 26.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안 제2조)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안 제3조 및 제4조)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 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11조)
 -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송통신 진흥(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에 관한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 방송통신 재난관리(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재해·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6. 국회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허가제도 개선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안 제28조제2항)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38조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안 제35조·제44조·제45조 및 제104조)
 - 통신망의 확충·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안 제50조제1항제6호·제7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안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개편(안 제6조)
 -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안 제8조)
 -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0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1조)
 -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안 제22조)
 -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안 제23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의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 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그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5. 정보보호 및 보안

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2010. 2. 18.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음. 제대혈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함.
- 따라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製劑)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7조).
-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관리업무를 기록하는 제대혈관리기록·전자기록을 작성·열람·사본 교부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 제대혈은행의 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등이나 제대혈관리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센터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21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대혈제제(製劑)의 검색, 관련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제대혈 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 제대혈이식의로기관은 제대혈이식에 필요한 제대혈제제의 검색을 제대혈정보센터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25조).
- 제대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제대혈관리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6. 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24조)

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2.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안의 제안이유

-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으로 한도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함(안 제26조의2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명의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둠(안 제26조의3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질문을 할 수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4 신설).
- 교원자격 검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있는 유치원교원자격 검정위원회를 폐지함(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함.

마. 가족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18. 본회의 의결)

○ 대안의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농장별 가축방역 상황 정보공개(안 제3조의2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보공개 대상 및 가축전염병,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양벌규정 보완(안 제59조).
 - 현행 양벌규정은 문연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31.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처벌 강화 방안으로 첫째,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함.
- 재범방지 방안으로 첫째,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
- 피해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성폭력전담재판부 지정을 의무화하고, 둘째,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주요내용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안 제20조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안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1. 국회본회의 의결)

○ 제안이유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신설)
 -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명확히 함.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안 제28조제5항 신설)
 - 모든 출입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안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및 제1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38조)
 - 이 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만 지문을 찍게 하고 있어 외국인 신원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불법입국 방지 및 외국인 신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함.
 -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범 외국인,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문직 종사 외국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 완화(안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인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추가에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우수 외국인력에게 국내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안 제23조)
 - 국내에서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그 신청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내 출생의 경우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 대한 보호사실의 통지(안 제54조제2항 신설)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장소를 가족·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안 제56조의9 신설)
 - 보호된 외국인은 대부분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서신수수·전화통화 및 청원의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 정지(안 제62조제4항 신설)
 - 강제퇴거 대상일지라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보호를 일시해제를 하거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 신설(안 제63조제2항)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보호에 대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장기보호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의적인 장기보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제3절 국회 접수 법률

1. 정보통신기반 구축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강용석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적 교통시설로서 위 시설에 부수되어 있는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한편, 라디오방송이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그러나 대부분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가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아니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운용주체 간 갈등으로 인해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 주요내용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주체의 장이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24.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 도로상의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 중의 일부는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의 접근을 저해하고 있음.
- 한편,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라디오재방송설비 등의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파수별로 라디오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선택적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라디오방송의 청취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어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은 해당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원활한 방송수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관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의 방송수신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관리주체의 장은,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수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이나 역사(驛舍) 등의 시설 안에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9. 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공기관·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의료인·방송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가 되는 각종 공·사문서나 민원서류, 계약서 등은 음성으로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 정보통신 보조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 2차원 바코드를 종이문서에 함께 인쇄하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배포하도록 하고,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반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

배포하도록 함(안 제21조 제4항 신설).

- 간행물(전자출판물을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간행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제5항 신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1.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단계적 시행규정이 많아 아직도 차별의 예외가 다수 현존하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제4항 신설).

-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항 신설).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6항).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3. 전자정부 실현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현행법의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고,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 한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최장 10년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1호).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3. 12. 박선영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3535명 중 1명만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동종범죄 재범률이 0.18%로 나타남.
- 현행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시 부착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보안처분의 부가가 합당함.
- 이에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 함.

○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자장치부착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자에 대하여 교정성적,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전체평가를 통하여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함(안 제10조 제1항).
-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심사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안 제28조 제1항).
-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안 제29조 제1항).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1항).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3. 16.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성범죄의 흉악성과 재범율은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기 때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도 필요함. 또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안 제35조, 제37조 신설).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38조 신설).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안 제39조 신설).
- 법원은 판결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함(안 제40조, 제41조 신설).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모든 자료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 신설).
- 공개된 신상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43조 신설).
-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6.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에게 학대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아동보호를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계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사례관정위원회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 또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3항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4항 및 제41조 제1항 신설).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신설).

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2. 임동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 등을 한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2조 및 제23조).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4. 김태원의원 대표 발의)

○ 제안이유

-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 개정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신설).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횡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제1항).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 제3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안 제9조 제1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10. 3. 3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제안이유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처벌 강화 방안으로 첫째,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함.
- 재범방지 방안으로 첫째,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
- 피해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성폭력전담재판부 지정을 의무화하고, 둘째,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주요내용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안 제20조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화를 의무화함(안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자.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2010. 6. 17.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제109조)고 규정하여 재판 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이는 사법 정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한 사법권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고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모든 법원의 판결문은 판사와 법원 직원들만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그리고 전국 모든 검찰청의 결정문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만 검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검색·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 수의 3~4% 수준에 불과함.
-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에게는 선별된 소수의 판결문만이 공개되고 있고,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사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문은 물론 소장과 답변서, 준사법기관의 결정문 등의

사법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정보 독점화에 따른 전관예우 폐단을 시정하는 등 사법 불신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학자 및 법조인들의 연구와 실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편집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법정보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사법기관 등”이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군검찰부 및 특허심판원, 조세심판원, 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합의제 심판기관을 말하고, “사법정보”란 사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영상물,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중에서 법령(훈령·예규 등 내부규칙 포함), 판결, 결정, 재결, 그 밖의 처분과 그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사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되 이 경우 비실명화하도록 함(안 제3조).
- 사법기관 등은 사법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공개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공개함(안 제4조).
- 누구든지 사법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검색·취득할 수 있는 사법정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보존된 판결문과 결정문, 각급 검찰청 및 군검찰에 보존된 공소장, 불기소처분 결정문,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재판확정재판기록 및 확정된 결정문 등으로 하고, 그 이외에 사법기관 등에 보존된 사법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통신망의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사법기관 등은 사법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 사법기관 등은 사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법정보를 관리·보관·제공하는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 사법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개가 금지된 사법정보를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사법기관 등은 전년도의 사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1. 운영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성폭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범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에서 다른 성범죄자와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
-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삭제).

-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1항).

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전자정부법」 제13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 이에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1항).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29.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이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당내의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활동의 보호와 당내경선의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경선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선선거인명부의 등재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제57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경우에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통합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실시간 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 어느 한 정당의 당내경선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이중투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3.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 21조에 따른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다양한 보안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최선의 보안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1. 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음.
- 이는 거래와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정보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예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하고,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를 보존할 때 암호화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

5 정보통신 산업육성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18.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원칙의 예외로서 통합발주의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규정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고시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분리발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단일사업별 금액으로 고시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고시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적용을 권고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단일사업별 금액으로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고시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적용을 권고받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4.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대변분야,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분야 등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복지TV와 법률방송, 육아방송과 실버TV 등 11개의 공익 채널이 운용되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통하여 2010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를 종전의 6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로 조정하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3항).

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9년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하나 현재 그러한 수단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기존의 재난 뿐 아니라 민방위 사태 시에도 경보 방송을 추가하여 급작스러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방송의 종류에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 민방위 사태를 추가하고 재난 방송의 범위를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추가 확대함(안 제75조 제1항).
- 재난 및 민방위경보방송 송출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75조 제2항).

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안 제2조)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안 제3조 및 제4조)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 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11조)
 -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보편적 서비스 및 방송의 공공성·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송통신 진흥(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에 관한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 방송통신 재난관리(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재해·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부대의견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률에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2.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허가제도 개선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안 제28조제2항)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38조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안 제35조·제44조·제45조 및 제104조)
 - 통신망의 확충·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안 제50조 제1항 제6호·제7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 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사항
 - 제38조 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을 것을 부대조건으로 함.

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9. 광정숙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1월 광주와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사업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게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이들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방송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방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0.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의 허가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게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정부제안)

○ 제안이유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기준 정비(안 제10조 및 제17조)
 - 방송사업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방송사업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시 승인신청서류 접수 창구 일원화(안 제15조의3 신설)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사항일 경우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 등의 변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면서 승인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대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 마련(안 제37조제7항 신설)
 - 신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왔으나 법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송사업 허가·승인을 취득한 사업자로 하여금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방송사업 출연금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 규정(안 제70조제2항 신설)
 - 방송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접사용채널이 무분별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음.
 -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 조정 및 유효기간 삭제(안 제70조제7항)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방송채널이 규정되어 있고, 채널 운용범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2010년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하는 위성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범위 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 일부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안 제77조)
 - 모든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다양한 유료방송 부가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108조제1항제7호)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함.
 -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방송문화진흥회가 권력으로부터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문화방송의 경영과 방송내용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하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함(안 제1조)
-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사항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함(안 제4조)
- 방송문화진흥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에 있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을 비상임으로 함(안 제6조)
- 방송문화진흥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 인사, 편성,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진흥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10조)

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이 3종 이상의 최신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항).

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5.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 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인증서 이용 기능을 구비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인증역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 신설).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개 또는 2개의 소수 방송채널을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다채널을 운용하는 유료방송은 200개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방송채널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채널운용 수가 많은 만큼 주파수 및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의 상황, 시청소비자 요구 변화 등에 의해 채널운용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수급, 채널명 및 채널사업자명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용약관변경 신고 외 사전 방송국변경허가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과도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변경허가 규정을 중요한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채널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사후 변경신고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방송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와 시청자가 시의적절하게 연계되어 방송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항 제5호 신설).

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법」에 다채널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운용관련 변경허가에 대해 경미한 사안은 사후 변경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기존의 변경허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4. 9.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와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수권범위의 일탈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존의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규정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과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4. 13.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개인이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인 게임물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 세계적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로 오픈마켓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 구글 등 세계적 오픈마켓 서비스의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국내 이용자는 이용 국가를 해외 임의의 국가로 변경해 해당 오픈마켓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 대다수의 게임들이 저용량에 단순한 내용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음.
- 이에 게임물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픈마켓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게임물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게임 산업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2조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 4, 제21조 제1항 4호 및 제9항, 제44조 1호).

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9.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대여하지 않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효율적인 법 집행 및 합리적인 기술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따라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3항 신설).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관리를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32조 제2항 제9호 신설).

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안형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이용요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용요금의 조정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들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방송시장의 후발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 이용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들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 남용을 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과잉규제로 보임.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IPTV 서비스의 이용요금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변화하는 방송소비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조 제1항 제2호).

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의 성장 및 중소기업의 판로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대기업 과점시장으로 성장되어 거래 중소기업의 폐해가 가중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고자, 'TV홈쇼핑 정책권고'를 5대 홈쇼핑에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권고 사항은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고 TV홈쇼핑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 규제적 성격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보호 및 판로지원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상품판매 시 방송편성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외의 부대비용까지도 상품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자들이 이들 방송채널을 활용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는 중소기업자의 판매상품을 100분의 60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가 이들 방송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제6항 신설).

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6.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이러닝(전자학습)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닝산업은 자체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용창출산업으로서 고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현행법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 많고 구체적 시책의 마련이나 필요한 조치는 미흡하여 이러닝의 기술발전 및 시장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러닝기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제12호,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 공공기관의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기준과 참여 이러닝사업자에 대한 보상기준 및 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 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기술자로부터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러닝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함(안 제20조의7 신설).

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3.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이 없어 최근 올림픽·월드컵대회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의 갈등·분쟁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 제1항).
-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6조 제5항).
-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제5항).

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6.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 대안의 제안이유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

○ 대안의 주요내용

-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음.
 -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의 대가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무선국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 신고제 전환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함.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함.
 - 전파 혼·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무선설비의 설치로 자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 현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기기별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6. 정보보호 및 보안

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2.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에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호의2 신설).
-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호의3 신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안 제5조 제1항).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함(안 제6조 제6항).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안 제6조 제7항 및 제7조 제2항).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7조 제1항).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그 절차를 강화함(안 제7조의2 신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8조 삭제).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감청을 한 경우 이를 기록매체에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입회인이 이를 즉시 봉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 기록매체로부터 감청기록을 따로 작성하되,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는 감청기록 및 기록매체 원본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 의사·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제13조).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안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거나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문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0. 변재일,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09년도의 경우 1,600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지국 수사’의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의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13조 제3항 삭제).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신청한 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7 정보통신윤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2. 26.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예컨대, 믹서기에 쥐를 넣고 갈아 죽이거나 25층 높이에서 개를 던지거나 승강기에서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동물 학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동물 학대 영상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경악, 혐오감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을 찍어 유포하고 있음.
-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9.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 공정성 관련 심의는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을 거듭 받아오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에 해당될 수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를 사실상의 ‘검열’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격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고 거의 대부분은 자율심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개시하는 경우는 공적토론의 대상이 되는 토론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심의토록 하고 특히 정부에 의한 공정성 심의 요구에 있어서는 양적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도록 해 언론의 본연의 비판기능을 보호하고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자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방송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토론의 일방이 자신의 입장이 방송된 정보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음(안 제32조 단서 신설)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금지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 제3호의2 신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3. 22.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보를 현행 법령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받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으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삭제요청 등은 임시차단 조치로만 하도록 하며, 정보의 임시차단 요청자와 정보게시자 간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44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임의로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임시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3 삭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킬 수 없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처분을 받은 해당 게시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과 면책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3. 25.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 이르는 등 인터넷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광고에 있어 유해성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유형에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5호의2 신설).

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이정선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이를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웹(web)상의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절차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연령확인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함.
- 이에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2. 현경병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인터넷 상의 광고 형태)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의료광고에 개인신상정보의 무단도용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함(안 제56조 제2항 제11호 신설).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제1항, 제4항).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제1항 제5호).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4. 14.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의무 부과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실효성이 없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 삭제).

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5.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송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이외의 전기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음.
- 이에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00조제1호).

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4. 29. 이성현의원 대표 발의)

○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행동진단 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7%, 고등학생의 6.7%가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게임을 즐기고 게임 도중 욕설을 하는 등의 게임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일정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인터넷게임 중독예방·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 실적 분석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청소년인터넷 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인터넷게임물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확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그 수단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청소년의 수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안 제12조).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게임의 이용료 등에 관한 결제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서만 결제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인터넷게임물제공자는 이용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특성·등급, 이용자가 가입한 인터넷게임의 이용요금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 누구든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

- 해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2010. 5. 7.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여가, e-메일, 쇼핑, 교육, 금융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이 필수불가결한 매체로 보편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용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의존과 탐닉이 심화되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 현상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한 조사에 따르면 '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14.3%, 성인 6.3%로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7조 8천억원에서 10조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해소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정보화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

- 및 지난 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의 대응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인터넷 게임, 채팅 등과 같은 특정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 및 해소 방법 등을 고지하게 하도록 함(안 제12조).
 -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차단이나 이용 시간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용자 또는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이나 이용요금 등의 이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도록 함(안 제16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하도록 함(안 제17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인터넷 중독의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상담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상담센터에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 국가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보·기술 및 인력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관한 고지의무,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의무, 이용정보의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25조).

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5.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중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등의 사안에 대한 담당기구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분쟁 조정업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제20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언론보도는 제외함(안 제44조의10 제1항).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28.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44조의5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①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 ②본인확인정보 유출방지 기술의 마련, ③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 제44조의5제1항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의 부과나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44조의5에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 신설)

제4절 정부 입법예고 법령

1. 정책추진기반 확립

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 12.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취지

- 정부 위원회의 남발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책임행정 미흡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 전자서명법 개정('09.12.30) : 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삭제

○ 주요골자

-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3(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5(위원회의 회의)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6(수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7(운영세칙)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운영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 시행계획 검토 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확정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확정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조정함.

2. 정보통신기반 구축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1. 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주택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도 지하 인입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지 후에는 가공(架空)으로 인입된 선로를 철거하도록 하며, 건축물 지하층에서의 편리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광섬유케이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의무화 및 계약해지 후 가공(架空)인입선로의 철거 조항 신설
 -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가공선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회선 인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할 경우에도 지하인입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인입배관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주 등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계약해지 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법체제로 인해 동일한 설비에 대한 설치방법이 사업자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외회선 인입 등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조항 신설
 -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 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함
 -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 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하층의 보안문제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구내통신회선으로 광섬유케이블의 선택적 설치기준 도입
 -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확산에 따른 가입자망의 대용량 전송용량 확보를 위해 건축 시 기존 동선 외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함
 -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FTTH 방식의 가입자망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정비
 - 구내통신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할 필요 있음
 - 업무용 건축물의 층구내통신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구내통신실의 시건장치, 실효면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면적의 추가 등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함

- 건축물의 층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내통신실 설치규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용 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을 명시하여 다양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전자정부 실현

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2. 3. 법무부 입법예고)

○ 제정이유

-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활용을 통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및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와의 조직·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문서의 범위 명시
 - 법 제5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시함
-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
 - 기관간 형사사법정보의 원활한 전자적 유통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유통표준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송신하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자문서 출력물과 동일하게 하며,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해당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유통표준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관간 유통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송·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유통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의 설치·구성
 -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형사사법정보공동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동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구로서 법무부에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하고, 단원은 법무부 공무원과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유통표준의 변경 등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기관에서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속한 기관 소속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형사사법정보체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법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1명씩 지명하는 4인과 형사사법 공동시스템운영단 단장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협의회 정기회의에 맞추어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2. 18.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취지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 및 3차로 3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공포·시행)을 개정하는데 이어, 추가로 선적증서 등 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93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2. 22.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취지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매체 수목이 완료된 대량 비치기록물의 원본 폐기절차를 마련하며, 준영구기록물 중 동종·대량기록물의 재평가시기를 단축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의 수집·관리 방안 마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을 기록물의 정의에 포함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는 수집·보존·활용대책 수립의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이관의무를 규정
-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추가
 - 특수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추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 국가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 범위·방법 등 관리방안을 구체화
- 보존기간 책정권한 및 책정단위 현실화
 -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보존기간 책정단위의 일관성을 위해 단위과제별로 통일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매체수록이 완료된 원본기록물의 폐기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규정
 - 매체수록이 완료되고 5년 경과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함
- 준영구기록물 중 동종·대량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평가 시점을 50년으로 조정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규정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개정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웹기록물을 영구기록물로 추가
 - 보존서고의 자동소화시설을 가스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 개정

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이유

-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과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연계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
 - 각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정보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기관은 목적과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주체는 열람청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동이용한 목적 및 정보의 종류, 이용시기, 법적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정보통제권을 규정함.
-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

-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시행령을 폐지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 등의 주요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전자정부와 관련한 표준화를 통해 행정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
 -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금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 자동차 등록사무대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신청, 사용자 등록 및 등록원부 작성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 자동차등록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등록번호의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적 민원처리방법 등 등록사무에 관한 특례 신설
 -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외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가 미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 등록 접수부 생략, 전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IT 선진국에 걸맞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함.
 -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함으로써 변경등록 전 등록내역을 조회하기 번거로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통합·일원화로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새로운 등록 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등록원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시·도간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조회 등 업무편의 제공이 기대됨.

바.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9.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지역무관 등 인터넷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른 등록 사무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 특히,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신설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등록사무의 전자적 민원신청
 - 자동차의 등록신청 및 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 또는 등록사무 대행자의 불편 초래.
 - 등록사무 신청 방법을 방문 또는 우편처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 대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직접확인이 가능한 사용본거지 등의 서류를 소유자 동의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초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령」제46조제2항에 따라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토록하고,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일부를 삭제함
 -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이 기대됨
- 시·도간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 등
 -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등 변경등록 업무 처리가 번거로움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 작성 및 구조변경사항 별도 기재 규정을 삭제함.
 -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등록사무(신규, 이전, 말소) 대행자에 대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
 - 복잡한 자동차 등록사무신청의 특성상 등록사무 대행자가 소유자를 0무방문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필요
 - 「자동차등록령」제50조 신설에 따른 등록사무 대행자의 사용자등록대상, 신청서류, 해지신청 및 재등록절차 등 근거규정 신설
 -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학비지원 업무를 전자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에의 업무위탁 등 기타 제도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의 구체화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방법의 구체화
 -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안 제31조의7)
 -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2 및 3)
 -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3. 26. 국무총리 공고)

○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수립·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3지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온실가스 목표를 이행한 경우에는 에너지 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운영함
- 부문별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관리업무를 담당함(산업·발전 : 지식경제부, 건물·교통 : 국토해양부, 농업·축산 :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 : 환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에 제출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에 대해 중복성 및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관리업체를 일괄 고시함
-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후 센터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대외적 대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짐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26.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 이유

-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 본제출 요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다문화가정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제기됨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면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민원불편이 제기됨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 보완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른 신청서식 보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표시 선택사항 추가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을 보완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4. 9.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이유

-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침의 작성 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 및 보완절차를 완화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수작업에 의존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해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대비자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체계의 개선
 - “기본계획지침”을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지침”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의 작성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
 - 기본계획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
-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조정
 - 집행계획 수립시 국무총리의 승인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
- 계획의 수정 조항 신설
 -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계획의 수정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계획의 일부 보완이나 경미한 수정의 경우 수정절차를 일부 완화
- 자원관리의 전자화 근거 신설
 - 각 기관의 비상대비 자원관련 정보의 실시간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자원현황의 전자적 수집·관리 근거 마련

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9.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10종의 공시성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근거 조항 변경
 - 종전 : 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
 - 변경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
- 선적증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추가

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보건복지부 공고)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누구든지 발급·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공시성 정보(총 10종)
 - 국토해양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3. 경찰청 공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여부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여부를 삭제하고,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7개 규칙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30. 법무부 공고)

○ 개정이유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0년 4월 15일 공포, 2010년 7월 16일 시행)

-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실무상 제기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

○ 주요 내용

〈시행령(안)〉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명칭 변경
- 수용기관의 장에 '보호감호시설의 장' 추가
-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신고절차와 주거이전 등의 경우 신청절차 구체화
- 피부착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에 대한 절차 구체화
-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 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이 되는 출소자등에 대한 통보, 조사, 집행지휘 내용 등 구체화

〈시행규칙(안)〉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서울보호관찰소내 설치 규정 삭제
-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절차 구체화
- 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되어 당사자의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행정심판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이의신청처리방법과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정법의 적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 내지 외교와 관련한 사항을 취급하는 등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방법
 - 본위원회의 심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전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해 내실있는 심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과 심리·재결의 신속성을 도모함.
-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
 - 심판절차에 참가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 신청, 피청구인 경정 신청, 심판참가신청, 청구변경신청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가 필요함.
 - 신청은 이의신청을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며, 결정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한층 강화함.
-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 사용절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의 접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사용절차를 일반민원이나 사건진행내역 검색 등 단순이용시는 사용자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자서명까지 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함.

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5. 24. 법무부 공고)

○ 제정이유

-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관리하면서 범죄발생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운용 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적관리시스템의 구축
 -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 관리 및 소속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검색·대조결과회보 또는 감정서 작성과 관련한 인적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인적관리시스템의 설치·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경찰청장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을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주체 및 절차
 - 수형인, 구속피의자, 군인인 경우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에 따른 채취 주체와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 시료채취사실의 기록
 - 시료채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료채취대상자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방법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는 구강점막 채취 등 시료채취대상자들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위임 또는 위탁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 수사기획관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장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
 -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 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 감식시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감식한 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방법 등에 의하여 시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그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시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자료를 보존 하도록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방법 및 절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삭제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 총리 산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

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6. 보건복지부 공고)

○ 개정이유

- 200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설립(2009. 12월)되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관련 운영 기관을 동법 제6조3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 삭제
 -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05. 28. 외교통상부 공고)

○ 개정이유

- 재외공관 공증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업무편의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증사무 처리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문서의 작성 및 보관을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상의 전자적 입력 및 보존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사확인필요문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종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06. 08.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취지

-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공공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시기 조정
 -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처리과에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하고, 기록관에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방문열람 방법 및 절차 등 명확화
 - 전직 대통령의 열람 전용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도록 하고, 열람 시에는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되,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토록 함.
 -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은 시스템으로, 비전자 기록물은 사본으로 열람하되 열람 후 즉시 파기토록 함.
-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방법 및 절차, 보안대책 등 구체화
 -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함.

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30. 농림수산물부 공고)

○ 제안이유

- 위해 축산물의 수입금지 명령 신설, 도축검사 교육 의무화, 공표 제도 신설 등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절차 등 제정
 - 법 제9조의 개정예 따라 정기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조사·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방법·절차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 및 기준원장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감시활동·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한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조사·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검사신청, 증명서 발급, 실적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법 등의 기술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유통·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제도 도입
 -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검역원장이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축산물 유통관리제도를 도입함.
 -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제도 도입
 - 현행과 같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후 이를 검사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영업장에 출입하여 수거증을 발급하고 축산물을 수거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축산물은 배달을 통해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증은 우편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축산물의 위생감시에 필요한 수거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의 대상 품목 설정
 -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을 신설하면서 해당 영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가공품은

-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소에서 직접 분할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위생관리가 되는 전문 영업장에서 생햄 등의 축산물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양돈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개선
 - 현행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규제대상인 영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료·원재료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신설하고, “최고”·“가장좋은”과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규정들은 삭제하도록 함.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 개정 법률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교육 현황·위생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영업자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및 식육란 유통판매업 영업자로 의무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합리화
 -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항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품질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 동일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소관 기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 식품위생법과 규제 대상이 유사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 기준과 되도록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도록 함.
-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관 기관에 따른 처벌 수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 22. 중소기업청 공고)

○ 개정이유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공장등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설치된 「법인설립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해 창업지원시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창업지원시책은 관련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과 지원실적 등의 정보가 부족
 -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창업지원시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이 각 기관별 창업지원시책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창업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신규로 시행된 창업지원사업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등 2009년 신규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직접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포괄적인 근거규정인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 제4조 제2항(창업지원계획의 수립)을 근거규정으로 사용
- '09년 신규사업의 예산규모,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창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관련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금의 알선”에 대한 용어를 수정함
-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등록요건인 “자금의 알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위법행위 적발
 - “자금의 알선”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자문 및 지원”으로 변경함
 -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화
- 부담금 면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국세청에 신규사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기관의 동제도 적극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 감사원 감사결과, 부담금 면제 대상 중소기업인데도 면제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확인
 - 부담금 부과대상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신규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기관은 부과대상자에게 동제도를 적극 알리고 면제실적을 매년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토록 함
 - 동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창업 초기기업의 경영부담 완화가 기대됨
-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기업에 대해 공장등록 특례를 인정함
- 분사기업은 설립초기에는 모기업의 공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 경우 공장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조달입찰, 병역특례신청 등에 참여 불가능
 - 창업지원법상 분사조건에 해당하고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
 - 분사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법인설립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 및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함
-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32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해 집에서 회사설립을

-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2010. 1.)
- 구축된 「법인설립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한 대법원의 법인등기 신청 등을 해당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함
- 동 시스템에 연계된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 설립 서비스의 향상으로 창업자들의 편의제고가 기대됨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제조업의 창업 분위가 최근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및 창업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02년 수준에 비해 미흡한 실정
 - * 창업중소기업수(천개) : (98)435→(00)482→(02)612→(04)427→(06)438→(07)377
 - 제조업 창업자에 대해 현재 면제중인 10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년 추가 연장함 ('10.8.3→'12.8.3)
 -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14.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10. 4. 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예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 도시형생활주택 중 승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 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함
-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 최소화
-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실행력을 확보
-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실행력을 확보

- 하자보수의 종료
 -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 의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 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툰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10. 4. 22.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인장등록(변경) 신고 서식의 신설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방법의 명확화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이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음
 -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대폭 확대
 -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확대하여 수험자 편의 제공
-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 신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05. 7. 29.)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7. 14.) 시행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중에 인장을 등록 하도록 개선 시행되었으나,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을 법제화
 - 인장등록(변경)을 위한 명확한 서식 기준을 마련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요건을 완화
 - 현행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정보망의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
 -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 중개업자 상호간의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 명확화
 - 거래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제출위임시 대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규정이 없음
 - 법인의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명문화
 -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
 - 현행 서식은 거래계약 신고시 해당 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 거래계약 신고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를 명확화
 - 거래계약 신고주택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관련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
-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서식 변경
 -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등을 위해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 서식의 발급권자 명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음

- 발급권자 명의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 서식 변경으로 법률 규정과 발급권자의 불일치를 해소

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4. 26. 환경부 공고)

○ 개정이유

-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처리에 따른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입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수입 폐기물의 수입·운반 또는 처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인계·인수 내용을 수입자, 운반자 및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함
 - 수입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효과가 기대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
 - 국내 사업장폐기물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및 처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수입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 입력 외에도 수출입(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폐기물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
 -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출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보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함
 - 다만, 상기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보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해소함

마.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7. 법무부 공고)

○ 개정이유

-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정공증인의 시설 요건
 - 법 제66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자공증 사무용 컴퓨터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프린터, 스캐너,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 ※ 지정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으로서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의 전자서명
 - 법 제66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자서명을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바.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17. 법무부 공고)

○ 제정이유

-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정공증인의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 개정 공증인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정신청서(별지 서식)' 서식 및 그 첨부 서류를 신설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근거
 - 전자공증사무를 위하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함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등의 형식 등
 -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대상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최대용량을 별표로 정함
- 전자문서등의 인증 촉탁 및 인증 세부절차
 -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인이 전자문서등의 인증을 촉탁하고,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함
-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보관
 - 전자공증시스템의 전자문서등 보존·보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살려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된 전자문서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20년간 보존하고,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증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정보의 동일성 증명 및 인증정보의 제공
 - 서서증서 인증서의 열람·등본 발급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촉탁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 중인 정보가 동일한지 증명하거나, 촉탁인의 청구로 보관 중인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 다른 법무부령의 준용
 - 전자공증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일반 서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함.

5. 정보통신 산업육성

가.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3. 1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전파법개정(진성호의원 발의, 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5년 이내→7년 이내)한 전파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주파수 156MHz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형어선의 선박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
 -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 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함.
 -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종사범위를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 무선국 운용제한·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기간과 비례되도록 정비

- 기타
 - ‘전파정책심의위원회’ 폐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2009. 3. 13.)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기간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에서 요금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자를 제외하기 위한 정비 등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5. 25. 지식경제부 공고)

○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9883호, 2009. 12. 30.)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현황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8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2조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제8조의 “기본계획”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계획”으로 명확히 함.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09. 12. 30.)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정보·계획을 1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이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
-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임.
 -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전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동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정함.
-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 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함
-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

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 이유

- 2010년도 제288회 임시국회 의결(2. 26.) 및 공포(3. 22.)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제1016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함
-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기간통신사업자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및 주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인가를 받도록 함
- 재판매사업자 진입요건 강화
 -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별정1호 또는 별정2호)에 비해 이용자 보호계획이 강화된 별도의 등록기준(별정4호)을 신설
- 이용약관 인가제도 개선
 - 인가대상 약관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용요금 증가효과를 유발하는 이용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등을 정함
-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 법률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설비제공 매출액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도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
 - 시설관리기관 등의 보유설비 및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설비현황에 대해 반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설비제공에 따른 매출 현황은 연 1회 제출하도록 규정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기준 마련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

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 공급원가, 사업자의 효율성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용대가를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
 -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하여 계약과 다르거나 부당히 낮게, 또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및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 기재·허위 기재 등 회계실체규정 위반시 매출액의 2/10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영업보고서 미 제출,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 회계절차규정 위반시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통합에 따른 시행령 이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상 사업용·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운영 및 재정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전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6. 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 이유

- 방송사업의 소유·경영 규제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제9786호, '09. 7. 3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과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사후규제 방법을 정하고, 방송광고 편성 및 편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범위 명확화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로 방송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이 아닌 문제점과 교육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중에서 '방송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 수립'으로 변경
-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안,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일간신문의 구독률 환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시청점유율 산정기간,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기준,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 제한 제도의 도입
 -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방송사업 소유제한의 유형과 방법을 정함
-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 제도의 도입
 -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제도의 도입
 -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시간 양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주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 하도록 하는 등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외주제작 프로그램 및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판단기준을 반기로 변경
 -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에 대한 산정 기간이 짧아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
- 방송광고 건수 규제제도의 폐지
 - 방송프로그램 광고에는 시간 규제만 있고 건수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광고·토막광고에서 광고시간과 광고건수를 동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중간광고·토막광고 규제에서 광고 건수 규제를 삭제

6.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2.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개정이유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 또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 단속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강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의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물성, 등록기자재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등록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 직권등록말소제도-저작물성 여부 및 진정한 권리자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이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 저작권법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 중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안 제공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등에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0. 4. 16. 국무총리 공고)

○ 제정이유

-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 등은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는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식재산의 창출·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공무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함
-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함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분류체계 마련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자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국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5절 국외 정보화 법제도

1. 정책추진기반 확립

가. 모로코, 차세대 정보화전략 '디지털 모로코 2013' 발표 (모로코상공신기술부, 2009. 10. 10.)

- 모로코 상공신기술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IT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디지털 모로코 2013(Maroc Numeric 2013)' 계획을 발표(2009.10.10)

*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 디지털 모로코 2013 주요내용

▷ 비전 : 모로코를 아프리카 지역의 역동적 IT 신흥국가로 건설

▷ 2013년까지 목표치

- 신규 고용 26,000명 창출(2008년 32,000명 → 2013년 58,000명)
- 국내생산(GDP) 270억 디람(35억 달러) 유발(직접부가 GDP 70억 디람, 간접부가 GDP

200억 디램)

※ 1 모로코 디램 ≒ 143원

○ ICT 활용 확대

- 공립학교 인터넷 보급 확대(2008년 20% → 2013년 100%)
- 가구 인터넷 보급 확대(2008년 10가구당 1가구 → 2013년 3가구당 1가구)
- 이공계, IT 공학도 인터넷 보급 확대(2013년 100%)

○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 확대(2008년 16개 → 2013년 89개)

▷ 분야별 중점추진전략

- 사회적 변화 : 교육주체의 IT 사용 일반화, 각 사회직업분류에 적합한 IT 접근을 제안하도록 공공·민간주체 동원, 국가 디지털콘텐츠 개발
-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 전자정부계획 특별조정기관 마련, 2011년까지 15개 선도 서비스·프로젝트 시행, 2013년까지 전반적인 전자정부 서비스·프로젝트 시행
- 중소기업의 생산성 : GDP 기여도가 높은 관련 산업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민관전문가 동원, 기업들이 IT 사용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장려
- IT산업 : 국내 IT 주체의 개발 용이화, 우수거점 개발, IT 오프쇼어링의 급상승

▷ 지원대책

- 인적자본 : 인적자본 특수기관 마련, IT 부문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성계획 수립, IT 학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
- 디지털신뢰 : 법제 개편 및 강화, 정보체계 안전 지원기관 설립, 정보체계의 안전성홍보

▷ 추진체계

- IT 디지털경제 국가심의회 : 총리가 주재하는 부처간 기관, 정책 결정 및 승인
- IT 디지털경제 조정위원회 : 신기술부장관이 주재하는 부처간 기관, 비전 및 목표 수립, 평가
- TIEN(정보기술) 개발조정부 : 실행 총괄 관리
- TIEN 국가관측소 : 조치

나. EU, '스마트·지속가능·통합' 성장을 위한 2020 전략 발표 (EU, 2010. 3. 3.)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향후 10년의 먹거리 및 비전을 제시한 'EU 2020 전략' 발표 (2010.3)

* EUROPE 2020 :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 EU 2020 전략에 관한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산업 침체, 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배제 등의 미래 도전과제 등 새로운 기술·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 도모

▷ 비전

- 스마트한 성장 : 지식, 혁신, 교육 및 디지털 사회의 촉진
- 지속가능한 성장 : 자원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통합적인 성장 : 노동 시장에 대한 참여 증진, 기술 습득 및 빈곤퇴치

▷ 추진목표

- (고용증대) 20~64세 인구 고용률을 현재 69%에서 75%로 증대
-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여건을 개선해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1.9%에서 3%로 증가시키고 혁신 정도를 파악할 새로운 지표 개발
- (에너지 효율성 증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한 20%~30%까지 감축시키고,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20% 증대
- (교육강화) 조기 퇴학률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30~34세 인구 비율을 현재 31%에서 40%로 증대
- (빈곤퇴치) 국가별 빈곤기준 미만에 처한 유럽 내 인구수를 25% 줄여 2,000만 명이상을 빈곤에서 구제

▷ 향후 추진일정

- 2010년 : EU 2020 접근법 및 통합 지침제안 및 논의, EU회원국 국가별 목표 및 중점과제

제시, EU회원국 국가별 개혁 프로그램 방안 마련

- 2011년 : 유럽 춘계 정상회담에 연례보고서 제출, 춘계 유럽이사회에 진전 상황 및 전략적 방향 평가 실시

다. 미국·영국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가속화 (Green IT Review, 2010. 5. 5.)

- 미국과 영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통합 및 공공 클라우드 도입 전략 추진을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 및 친환경 IT 서비스 환경 구축 주력
-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친환경 ICT 운영을 통한 총체적인 친환경 경제 활동 계획 발표('10. 2)
 - 데이터센터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IT 자원을 공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격근무를 확산한다면 정부기관들이 환경보호책임을 좀 더 잘 실천하게 될 것으로 전망 (비벡 쿤드라 Vivek Kundra, 연방 최고정보책임자)
 - 미국 내 데이터센터는 '98년 432개에서 '09년 1,100개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에너지 감시를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스타(EnergyStar) 인증 계획 수립
- 영국 정부는 새로운 ICT 전략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10. 1)
 - 영국은 수 백 개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를 10~12개로 통합하는 계획 추진 중
 - 영국은 정부용 클라우드(G-Cloud)를 설치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센터 효율성 개선 전략 수립
- 한편, 그린피스(Greenpeace)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 표명
 - '친환경 IT-클라우드 컴퓨팅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보고서('10. 3)를 통해 향후 데이터 센터의 전력소비 급증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대 문제 지적

라. EU, 미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EU, 2010. 5. 19.)

- 유럽위원회는 미래 사회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EU 2020'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7개 이니셔티브* 중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발표(2010.5)
- (추진배경)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이버 범죄의 증가 및 신뢰도 저하, 네트워크 및 R&D 투자 지원 부족, 상호운용성 및 기술지원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기대효과) 사회 전 분야에 ICT를 확산시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및 고령화·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탈피
- * 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 기후·에너지 및 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2. 정보통신기반 구축

가. 영국, 정부 주도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 가속화(영국BIS, 2010. 3. 4.)

- 영국 정부는 미래의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Broadband Delivery UK, BDUK)을 설립(2010.3.4)
- * An Assessment and practical guidance on next generation access risk in the UK
- BDUK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차세대 기금(Next Generation Fund)을 관리하며, '보편적 서비스 공약(Universal Service Commitment)*'에 따라 2012년까지 영국 전역에 2Mbps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
- *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2Mbps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현실에서보다 보편적인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2009년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전략에서 소개

◆ 차세대 브로드밴드 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차세대 브로드밴드의 제공 범위 조사

- 다음 3가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 영국 전역에 걸쳐 차세대 브로드밴드가

제공되는 범위 조사

- 전적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접근방식
- 디지털 브리튼 차세대 기금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네트워크
- 보조금을 받는 네트워크를 보충하는 지방 개입

▷ 차세대 기금의 효과성 검증

- 2017년까지 인구의 90%까지 차세대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범주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모든 유선에 대해 월 50파운드의 세금 형태로 부과하고자 하는 정부 제안을 위한 차세대 기금의 효과성 검증

▷ 초고속 브로드밴드 제공에 따른 상대적 비용 예측

- 서비스 제공 거리 및 제공 대상 인구수에 따라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 강조

▷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지역에 공공 부문 및 파트너 조직들이 차세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농촌 및 영세 도시 지역에 일자리 창출,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서비스, 헬스 케어 및 고령자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도울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축에 따른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략 도출

나. 미국,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계획’ 발표 (FCC, 2010. 3. 16.)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0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 확대를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계획(Connecting America : The National Broadband Plan)’을 발표(2010.3.16)
- FCC는 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미국 전역에 최신 브로드밴드 설비를 구축하여 일반 가정에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
- ※ 본 계획은 향후 기술 및 시장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계획(안)을 제시할 예정

◆ 국가브로드밴드 계획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2000년 이후 브로드밴드 접속 및 이용률은 증가했으나 보급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IT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로드밴드 보급률의 증대 필요성 인식

▷ 2020년까지 6대 추진목표

- 미국 내 1억 이상의 가구에 최소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5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최대 초고속인터넷 시장 구축
- 농어촌 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지원하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에서 '커넥트 아메리카기금(CAF)'을 출연하여 최대 155억 달러를 조성해 빈곤계층과 농어촌 인터넷 확산을 위해 투자
- 학교, 병원 및 공공기관 등에는 최소 1Gbps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접속 환경 제공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운용 가능한 전국 무선브로드밴드 공공안전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미국이 그린에너지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미국인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위한 4가지 기본 정책방향

- 경쟁강화정책 : 활발한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복지, 기술혁신 및 투자정책 설계
- 정부소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 정부가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재배치, 운영 및 경쟁 진입장벽 완화
- 광대역망의 보편적 이용환경 : 미국 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광대역망 활용 및 여건조성 : 복지, 에너지, 교육 분야 등에 광대역망 활용 극대화 및 관련 법, 정책, 표준 등 개혁

다. 호주,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 정비 (호주 DBCDE, 2010. 3. 19.)

- 호주 정부(DBCDE*)는 초고속 인프라 구축 정책 실행을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 정립을 위해 '2010 통신법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2010.3.18)

*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브로드밴드, 통신 및

디지털 경제부)

** Tele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Fibre Deployment) Bill 2010

- (추진 목적) 호주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산업 개발 지역에 추진 중인 FTTP* 인프라 설치를 통해 보다 수월한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법제 기반 보완

* Fibre-To-The-Premises, ‘가정 내 광케이블’ 또는 ‘댁내 광케이블’로 불리는 광케이블-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

- (기대 효과)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앞당겨 궁극적으로 호주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차세대 브로드밴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보다 빨리 누릴 수 있고, 미래의 신규 구축비용 절감 효과

◆ 2010 통신법 수정 법안

▷ 수정 법안 주요 내용

- 법률 하에서 적용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유형 명시
 - 기존 유선 및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가 광섬유가 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 본 법안은 1997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1997)에 새로운 Part 20A로 추가할 계획
- 광섬유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코드와 표준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법률 Part 6의 산업 코드 및 표준 프로세스를 수정

▷ 통신법 종속 법안 개발 계획

- 호주 정부는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속 법안 개발 예정
 - 법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지침, 인가, 인증 및 인식 제고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정부, 이해당사자들이 협력
 - (목표) 2010년 7월 1일부터 법률 프레임워크를 준비

라. 유럽, 5억 유로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egovmonitor, 2010. 6. 9.)

- PRACE*는 유럽의 슈퍼컴퓨터 용량을 증가시키고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5억 유로 규모의 이니셔티브 착수

- * Partnership for Advanced Computing in Europe : 범유럽 차원의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업계 및 연구자들의 공동 프로젝트 협의체
- PRACE는 EC(유럽위원회) 및 유럽 전역의 20개 국가를 연합하여 과학자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슈퍼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개요

- 유럽 전역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모아 단일 인프라 구성

▷ 목적

- ‘유럽 2020 전략(EU 2020)’ 하에서의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의 목표와 부합하여 유럽의 연구 및 경쟁력을 강화

▷ 기대효과

- PC 10만 대 이상과 맞먹는 컴퓨팅 액세스가 가능하고 초당 1,000조의 연산 횟수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산 속도 증가 전망
- 연구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절감, 고령화 등과 같은 과학 및 기술 과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참여 국가 및 예산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향후 5년에 걸쳐 PRACE 이니셔티브에 각각 1억 유로를 투자
- EC는 EU의 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7,000만 유로 지원
- * 유럽에서의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추진 예정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등 16개 국가는 적은 규모의 자원 및 지식을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독일의 옐리히(Jülich)에 있는 'JUGENE' 시스템을 시작으로 2010년 8월 1일부터 PRACE의 슈퍼 컴퓨팅 인프라 활용이 가능
- 2015년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이 유럽전역의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예정

3.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가. 영국, 교육 분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홈 액세스(Home Access)' 정책 추진 (Becta, 2010. 1. 12.)

- 영국 정부는 교육 분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2010년 '홈 액세스(Home Access)' 정책 계획을 발표(2010.1.12)
 - (추진 내용) 3세~9세 어린이가 있는 27만의 저소득 가구에 승인 받은공급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브로드밴드 연결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
 -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시민은 컴퓨터 1대, 1년 간 인터넷 연결 지원 등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혜택 모두를 선택하는 풀 패키지까지 신청 가능

◆ 홈 액세스 정책의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2009년 현재, 영국 전체 가구 중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35%의 저소득 가구와 집에 컴퓨터가 없는 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교육 분야 정보 격차해소의 필요성 증대

▷ 추진 목표

- 영국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IT에 기반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제공 및 환경 조성

▷ 추진 경과 및 내용

- 2008년 7월 : 홈 액세스 정책에 관한 최종 전략 보고서 발표
 -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한 테스크포스의 성과
- 2008년 9월 : 영국 총리가 홈 액세스 정책 추진을 공식 발표
 - 3억 파운드의 공공 자금으로 2011년까지 5세~18세의 학생을 보유한 가구에 컴퓨터 제공 및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기로 결정
- 2008년 10월 : 아동학교가족부(DCSF)가 1차 홈 액세스 정책의 실행 내용 발표
- 2009년 2월 : 두 개 지방 도시의 15,000 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추진
- 2010년 1월 : 본격적인 홈 액세스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 발표

▷ 추진 체계

- 아동학교가족부와 벡타(Becta)*가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을 담당
 - *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수행 계획 및 성과를 보고하지만, 공무원과 같이 정부의 감사와 지시를 받지 않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비정부 공공 기구로 관련 정책 자문 및 사업 수행을 지원

나. 영국, 고령층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Get Digital' 추진(PublicTechnology.net, 2010. 1.)

- 영국 정부는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해 290만 파운드(약 53억 7,900만 원)의 새로운 'Get Digital' 프로그램 추진
 - (배경) 노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2/3가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는 실정
 - 1,000만 명 이상의 영국 성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이 그룹의 400만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39%가 65세 이상이며 웹이 제공하는 많은 기회에서 소외
 - (목적) 고령층이 디지털 세상에서 보다 넓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 즉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것

◆ Get Digital 주요내용(~2011년 3월말)

- ▷ 영국 전국의 195개 노인보호시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81개 농어촌 지역 시설의 약 7,800명의 고령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 ▷ 추가적으로 300개 노인보호시설의 총 20,000명의 고령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확대할 계획
- ▷ 지역 공동체와 노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60만 명에게 쉽게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 IT 이용시설을 구축
- ▷ 컴퓨터 리터러시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강사(expert Scheme Support totors)를 포함한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
 - 교육을 통해 웹을 이용하는데 자신감 증대시키는 효과
- ▷ 노인보호시설과 지역 학교, 그리고 '세대 간 학습 활동'을 위한 그룹의 청년들 사이의 'Get Digital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지원
 - 청년과 고령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위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에 의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Registered Social Landlords, RSLs)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지원을 제공
 - 적절한 장비, 무료 교육과 자원, 지역 기관들을 위한 조언 등을 포함

다. 스코틀랜드, 텔레케어 추가 투자 계획 발표 (The Scottish Government, 2010. 3. 28.)

- 스코틀랜드는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한 텔레케어에 400만 파운드(68억 2,244만 원)를 추가 투자하는 계획* 발표

* Telecare Development Programme

- 2010~2011년 동안 스코틀랜드 정부의 e헬스(e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32개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텔레케어 이용을 장려할 계획

◆ 텔레케어 계획 주요 내용

▷ 추진경과

- 2006년 이래로 2만 5,000명 이상의 노인들의 텔레케어 혜택을 위해 총 1,600만 파운드(272억 8,976만 원)를 투자
- 4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자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에 총 2,000만 파운드(342억 980만 원)를 투자

▷ 주요내용

- 고령자가 일정 시간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등 움직임을 감지하는 동작 센서 보급
- 상주 직원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화재, 홍수, 불법 침입자에 대해 경보 처리를 하는 가정 안전기기 보급
- 위기 상황에서 호출할 수 있는 비상 버튼 보급
- 운반 장치 용기를 사용하여 약을 먹도록 상기시키는 전자 경보 제공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진동 베개 개발·보급

▷ 기대효과

- 400만 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통해 1만 3,000명에게 텔레케어 서비스 혜택 지원
- 고령자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기대

4. 전자정부실현

가. 영국 런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포털 구축(egovmonitor, 2010. 1. 7.)

- 영국 런던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시장은 시청의 주요 데이터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공유하기 위한 포털(London Datastore) 오픈 계획을 발표
- 2008년 구축했던 범죄 관련 데이터 공개·공유 포털(crime map)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런던시의 투명성과 책임감 향상을 위한 혁신 전략의 하나로 포털 구축을 선택

- 런던 시청의 포털은 미국 연방 정부의 데이터 공개 포털(Data.gov)을 벤치마킹하여 구축되었으며,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약 200여개의 데이터 셋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공개 데이터 셋에는 런던 시민과 기업을 위한 교육 부문(학생 수, 교육성과 데이터등), 의료 부문(의료비 지원, 병원 대기 및 환자 수, 기타 의료 관계자 정보 등) 및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관련 데이터 등이 포함
- 보리스 존슨 시장은 이러한 공공 데이터 공개·공유 포털 구축을 통해, 영국 시민의 참여 촉진과 민주주의 성장, 런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관련 업체의 경쟁력 증진 등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나. 호주, 21세기형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전략 보고서 발표(Government 2.0 T/F, 2009. 12. 22.)

- 호주 러드(Rudd) 정부의 ‘미래정부(Government 2.0) T/F’는 21세기의 새로운 정부 모델로 선정한 '거버먼트 2.0(Government 2.0)' 구현을 위한 최종 전략 보고서* 발표 (2009.12.22)

* 'Engage: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 Government 2.0 Taskforce

◆ 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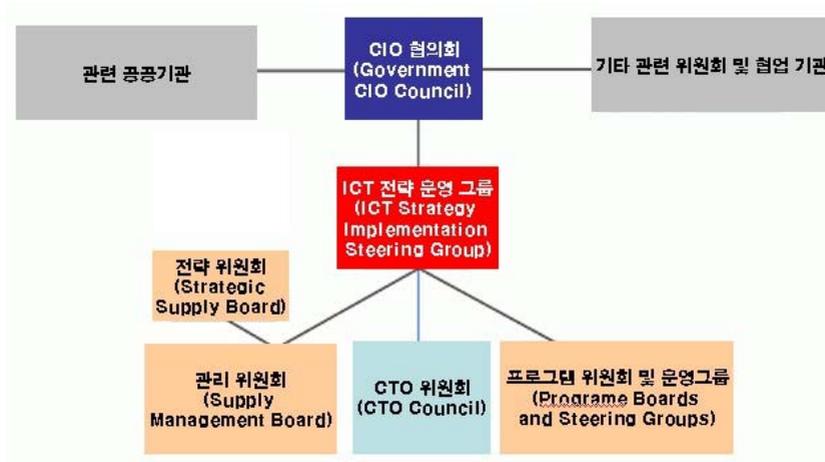
- ▷ 호주 ‘거버먼트 2.0’의 개념 설정 : 21세기 정부 운영 모델의 지향점
 - 웹 2.0 등의 새로운 협력지향적 툴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과 서비스 전달, 규제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engage)’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효율성 높은 정부 운영 체계
- ▷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실천 정책 분야별 전략
 - ‘거버먼트 2.0’의 기반 조성 : 범정부 차원의 조직 및 문화 혁신
 - 전략 1 : 열린 정부로의 정부 전환을 범정부 차원에 공표
 - 전략 2 : 범부처간 리더십, 지침 및 지원의 조율
 - 온라인 시민 참여 촉진

- 전략 3 : 관련 지침 개정으로 정부에 의한 온라인 참여 촉진 활성화 도모
- 전략 4 :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구
 - 2009년 11월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PSC)가 발표한 공무원들의 웹 2.0 툴 활용과 온라인 대민 업무 및 시민 참여 촉진에 대한 지침을 기반으로 세부 실천 촉구
- 전략 5 : 개별 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수립
- 국가 자원으로써 공공 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 관리
 - 전략 6 :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재활용 되는 PSI 구축
 - 범정부 차원의 공공 정보 개방·공유 포털(data.gov.au) 운영 등
 - 전략 7 : 지적재산권 운영에 관한 이슈 제기 및 해결 방안 모색
 - 전략 8 : 정보 공개를 위한 관련 법제 및 프레임워크 수립
 -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개 체계 정립에 관한 지침(Whole of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ation Scheme)에 따른 순차적 적용·확대
- 열린 정부의 정책 결정 요인 개발
 - 전략 9 : 다양한 웹 2.0 툴 등에 따른 접근성 보장
 - 전략 10 : 웹 2.0과 보안 이슈 해결
 - 전략 11 :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공공 정보의 기밀성간 균형 유지
 - 전략 12 : 호주 정부 기록의 개념 및 범주 정의
 - 전략 13 : 정보 공개 활동 촉구를 위한 장애 환경 개선

다. 영국, 공공 부문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 ICT 전략' 발표(CabinetOffice, 2010. 1. 29.)

- 영국 정부는 더욱 스마트(Smarter)하고 저비용(Cheaper)이며 친환경적(Greener)인 공공부문 ICT 인프라를 위한 '정부 ICT 전략(Government ICT Strategy)'을 발표(2010.1.29)
 - 본 전략은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공유 지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공공 부문 전반에서의 ICT 간소화 및 표준화 실시
- (추진체계) 내각부를 중심으로 CIO 협의회, CTO 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ICT 전략을 운영하며, 각 영역에 대한 업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자체 거버넌스 담당 기관을 운영할 예정

〈 ICT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



- (기대효과) 공공부문 선진화를 통해 2013년~2014년 사이 연간 32억 파운드(약6조원) 절감 가능

〈 정부 ICT 전략의 14개 세부목표 및 추진내용 〉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내용
공공부문 및 사회기반 시설 강화 (6개 추진전략)	공공 부문 네트워크 추진	공공부문 네트워크의 표준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 및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의 유무선 통신 시설 구축
	정부 클라우드 (G-Cloud) 서비스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공공부문 역량 및 보안성 향상을 통해 비용 절감
	데이터 센터 전략	데이터 센터를 최대 12개로 감축하여 약 3억 파운드 비용 감소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75% 절감과 지속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정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구축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요금 지불 방식으로 공유와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정부조달 소요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능
	공유 서비스, 정부 클라우드로 시스템 이동	공공 서비스의 공유를 위해 정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유 서비스로의 지속적인 이동 추진
	공동 데스크톱 전략 구축	공동 모델을 사용하는 데스크톱 설계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증진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내용
표준화 및 단순화 (4개 추진전략)	아키텍처 및 표준화 추진	여러 공급업체들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
	오픈 소스, 개방형 표준, 재사용 전략	공평한 조달 체계 및 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툴을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린 ICT 전략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가능하고 더욱 효율적인 ICT를 제공
	정보 보안 및 보증 전략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보호
역량 강화 (4개 추진전략)	IT 활용 변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IT 활용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맞는 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역량 인재와 조직 구축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 관리 및 적극적인 혜택 관리를 이용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
	공급 관리	개별 조직과 공공 부문 모두를 위해 공급업체들의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
	국제적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국제 조약과 지침이 영국의 국가 필수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영국의 ICT 서비스 선두 유지

라. 영국, 정부 업무 능률화를 위한 ‘스마트 정부’ 계획안 발표(CabinetOffice, 2009. 12.)

-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정부 업무 능률화를 위한 ‘스마트 정부(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계획을 발표(2009.12)
- 본 계획은 2011년까지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3개의 우선적 실행 계획 제시

〈실행계획 및 추진내용〉

실행계획	주요 추진내용
시민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시민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주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 영어 및 수학 국가 기준에 못 미치는 초등학생을 위한 1대1 교습 등에 대한 권리 보장 ·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Tell Us Once’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출생 시 시민이 연락해야 하는 기관의 수를 2개에서 1개, 사망 시 7개에서 1개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 동안 3,0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디지털 참여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Digital Participation)의 개발 지원 · 데이터 및 공공 정보 개방을 통한 투명성·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지리원(Ordnance Survey) 지도 데이터, 실시간 철도, 시간표, NHS 선택(NHS Choices)을 지원하는 데이터, 세부 부처 출 데이터 등 1,000개 이상의 공공 데이터 세트 공개 · 강력한 시민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건강지표(Civic Health Index)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시민건강 측정 - 새로운 사회투자은행 및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s)의 시범 사용 등 시민사회 기관에 자본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
<p>중앙업무와 지방업무 사이의 관계 재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성과 체제의 능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정부가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까지 지방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표의 수를 감소하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예정 · 보고, 조사, 평가 등 중앙에서 일선 업무에 부과한 업무부담 감소 · 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 표준화 및 성과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범죄 유형, 병원 절차 비용, 국가 학생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 성과 데이터를 2011년까지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
<p>중앙정부 업무 능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조직 재개편을 통한 능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 내에 연간 1억 파운드를 절감하고, 광범위한 공공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 임금에 대한 개혁 시행 · 산하기관의 통합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여 개의 산하기관을 통합 및 폐지하여 2010 예산연도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백오피스 기능 및 조달 프로세스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업무에 대한 비용 50%, 마케팅 및 통신에 대한 비용 25% 감소시켜 일선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 절감

마. 미국, IT 서비스들을 중앙 집중화하는 통합 계획 마련(Nextgov, 2010. 2. 4.)

- 미국 연방정부 CIO 비백 쿤드라는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들을 위해 IT 서비스들을 중앙 집중화하는 계획을 마련(2010.2)
- 이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의 회계연도 2011 예산에 '특별 주제들(Special Topics)'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기술

- (기대효과) 재정 및 기록 관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같은 영역에서 시민 부문 전반에 걸쳐 공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관들을 선정
- (소요예산) 예산관리국(OMB)의 회계연도 2011 예산 계획 내에 별도의자금지원으로 5,000만 달러(585억 7,500만 원)를 요청
- (주요내용) ① 민간 기관들의 중앙 IT 서비스 공급업체 선정 계획, ② 원격 또는클라우드 컴퓨팅을 강력하게 지원, ③ 정부 전반에 걸쳐 1,100개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통합을 요청, ④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해 연방 전자시장(eMalls)의 이용을 주장

바. 캘리포니아, 정보자원 그린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State of California, 2010. 2. 9.)

-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보자원 그린화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표(2010.2.9)
- 전산장비 운영 효율화, IT 거버넌스(Governance) 표준화 및 지출 투명화를 통한 정보 자원의 전력 소비 감소 및 비용절감 목표
- 특히 전산장비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경과를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공식 보고할 것을 명령
- 2012년 7월 1일까지 전산장비 에너지 사용량 30% 감축 목표 제시
- 주정부 기관의 데이터센터 이용 면적 총량을 2011년 7월까지 50% 감축, 비네트워크 장비의 서버실 폐쇄 등 비용절감을 위한 명령 발효
- 주민 대상의 핵심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은 주정부 CIO가 선정한 데이터센터에 이관하며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정부 네트워크(CGN)로 이관
- IT 인프라와 공유 서비스 일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주정부 CIO(State CIO) 및 CIO실 (Office of CIO) 산하에 각 기관별 CIO 및 정보보안책임자(ISO)를 임명하는 등 IT 거버넌스(Governance) 표준화도 추진
-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각 기관은 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전년도와 당해 년도, 예산 년도의 인건비를 비롯한 정보자원 비용 현황과 전망을 요약한 보고서를 의무 제출

사. 영국, 스마트폰 전용의 무료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highways, 2010. 2. 15.)

- 영국 도로청(Highway Agency)은 스마트폰에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전달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발표
 - (추진 목표) 도로 사용자들에게 도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 등을 지원
 - 교통 체증과 운전 거리 감소로 인한 탄소 배출의 감축 효과도 기대
 - (추진 배경) 2009년 도로청의 공식 웹 사이트와 연계·통합된 모바일 전용 웹 사이트 구축의 높은 이용률 증가에 따라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 (추진 내용) 도로청 국립교통통제센터*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업데이트
- * National Traffic Control Centre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데이터 종류

- ▷ 운전자의 현재 위치, 운전 경로 중 도로 사정, 교통 정보 등
- ▷ 고속도로에 대한 다양한 신호 및 경보 정보
- ▷ 전화 정보 서비스 정보
- ▷ 디지털 라디오 및 인터넷상의 라디오 교통 방송 정보
- ▷ 전국 라디오 방송국의 여행 정보
- ▷ 구글의 지도 서비스 정보

아. 핀란드, 만성질환자의 디지털 셀프케어(Digital Self Care) 시스템 구축 (e-Health Europe, 2010. 2. 15.)

- 핀란드 에스포(Espoo)*시는 의사의 업무 부담 감소 및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책임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디지털 셀프케어’ 시스템 실시
 - 2009년 6월 구축된 본 시스템은 현재까지 만성질환 환자 40,000명 중 0.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는 횟수가 연간 2,500건 감소

- *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도시로 화강암 채석장 산업과 농산물 및 유제품 생산
-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각막증 등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즉각 진료 가능
- 본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와 의료진들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진료팀으로 구성된 후, 공통 치료 계획 수립
-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료진)와 환자들은 온라인 상호접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 목적 및 치료 방법 파악·공유

◆ 디지털 셀프케어 시스템 주요 기능

- ▷ 약물치료, 신체적 조언, 영양분, 체중관리 등과 관련한 상담관리
- ▷ 의료진은 환자질병 및 치료 정보 상호교류를 통해 최상의 치료방법 모색
- ▷ 환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 포털 사이트의 건강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 접속 및 응급상황 시 의료진과 접촉 가능
- 디지털 셀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개선 및 치료 과정에서의 소요시간 절감 등 의료기관과 환자의 부담 경감

자. 호주, GIS를 이용한 ‘비주얼플레이스(VisualPlace)’ 시범 운영(egovmonitor, 2010. 2. 5.)

- 호주 빅토리아 주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주정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비주얼플레이스(VisualPlace)’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 본 사업은 지도를 통해 공간정보를 탐색하고 시각화한 것으로 2010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
-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지도, DB, 공간분석을 통합한 것으로 DB를 활용하여 기존의 종이지도를 디지털 지도로 대체하고 이러한 정보를 각종 분석SW를 통해 의미있게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
- 비주얼플레이스는 GIS를 활용하여 위치기반 정보의 시각화 및 빅토리아 주 정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이를 위해 빅토리아 주 정부에 대한 인구통계, 고용, 교육, 건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입력
- 사용자들은 비주얼플레이스를 통해 기차, 전차궤도, 경찰서, 인명구조대, 도서관 등의 빅토리아 주 전체의 서비스 지역에 대해 검색 및 위치 확인 가능
- 검색된 데이터는 열지도, 수직 돌출, 음영 아이콘 등 입체적으로 표시

차. 스페인, 전자정부 원스톱 서비스 실시(epractice news, 2010. 2. 23.)

- 스페인 카탈로니아(Catalonia) 자치정부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1,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단일 웹 사이트 'VPO(Virtual Procedures Office)'로 구축(2010.1.11)
- 현재 1,000개의 전자정부 서비스 중 160개를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예정

◆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카탈로니아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적 절차 간소화,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VPO 웹 사이트 구축

▷ 이용가능한 서비스 : 가족 증명서, 수도세 할인, 거주 증명서, 해당 학위를 얻기 위한 교육 시험 등록,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통지, 병가 및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한 통지, 공공 기관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자 가입 등

▷ 주요 특징

① 접근성 향상

- 사용자는 여러 웹 사이트와 플랫폼을 방문하지 않고 VPO 웹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 검색 및 접속 가능
- 자연어 검색 및 주제별 디렉토리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카탈로니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제공

② 행정기관 간 상호 연결

- APO 웹 사이트는 국가 전자정부 포털 '060.es' 및 타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링크로 연결시켜 사용자의 각각의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서비스 이용 가능

③ 효율성 향상

- 온라인에서 행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이용 가능 시간 단축

④ 투명성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 개인파일(my folder)을 통해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수행한 모든 절차의 상세내용에 대한 재검색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기타 증서를 통해 디지털 서명으로 개인 파일에 접근 가능
- 가장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비스는 건강관련 기록 파일로써 이 파일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의료기록(의료서류 및 처방·진단 결과 등) 검색 가능

카. NHS Trust, 영국 전역에 영상회의 서비스 도입 (The Green IT Review, 2010. 2. 25.)

- 영국 국가의료서비스기관(NHS Trust)은 BT(British Telecom)에서 구축한 국가 광대역 보안통신망인 N3를 통해 영국 전역에 영상회의 서비스 도입 예정
 - NHS Trust의 영상회의 서비스는 지금까지 지역 단위로만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도입은 BT의 영상회의 부문 자회사인 BT 컨퍼런싱(BT Conferencing)의 관리 하에 영국 전역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병원과 메디컬 센터 및 일반 개업의원 등을 연결함으로써 효율성 향상 및 출장 감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축 기대
 - NHS Trust의 직원 및 환자, 방문객들의 연간 여행 거리는 약 104억 Km로 금번 영상회의 서비스의 도입으로 연간 여행경비 5천7백만 파운드 및 7,200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예상
- NHS Trust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1천 8백만 톤으로 1990년 이래 40%나 증가하여 영국 정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 IT 도입이 필수적
 - 망 접속 가능직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시 통근 거리 5.4백만 Km의 단축 및 773톤의 탄소 배출량 절감 가능
 -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 처방전을 사용할 경우 연간 4,197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나무 십만 그루 및 14,100 톤의 탄소 배출량에 해당

파. 브라질, 정보공개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포털 구축 (egovmonitor, 2010. 3. 8.)

- 브라질 정부는 소통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의 정보 공개·공유를 위해 새로운 전자정부 웹사이트 '포털 브라질(Portal Brasil)' 구축(2010.3)
- '포털 브라질'은 사회소통국(Secretaria de Comunicação da Presidência da República) 주도로 총 41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 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포함

◆ 주요내용

- ▷ 추진목표 : 브라질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협업 플랫폼을 창출하여 사용자의 참여 활성화 증대
- ▷ 기대효과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정부 행정효율성 향상, 정보 산업 육성 및 신규 서비스 창출
- ▷ 구성내용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모든 콘텐츠는 포르투갈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모든 브라질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도 사용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성
 - 현재 브라질 국가정보, 경제, 과학기술 등 12개 주제별 카테고리에 총 850건의 기사, 사진 6,000장이 저장된 DB, 40개 이상의 인포그래픽스*, 2,000건 이상의 동영상 및 UCC 등의 콘텐츠 수록
 - *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또는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뉴스 그래픽(Newsp graphics)이라고 불리며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
 - 멀티미디어 매거진 제공
 - 멀티미디어 매거진은 텍스트, 동영상 및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조합하여 각각의 기사를 생생하게 전달
 - 향후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통합하여 멀티미디어 액세스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계획

하. 불가리아, 공공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웹 플랫폼 개시 (eGovmonitor, 2010. 3. 16.)

○ 불가리아 교통정보기술통신부(MITTC)*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통합 e서비스 추진을 위해 웹 플랫폼(<http://portal.egov.bg>)을 개시

- MITTC는 사용자들에 플랫폼 개발과정을 공개하여 사용자들의 제안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웹 플랫폼 제작하였으며, 현재 불가리아어만 제공

* Ministry of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 주요 서비스

▷ 주소 및 등본 발급 서비스

○ 신분증이나 여권 주소 변경시 사용자들의 시간 절감(과거 1시간 소요, 현재 2분 이내)이 가능하며 현재 소피아 지역을 포함한 2개 지역에만 적용가능하나 향후 확대할 예정

▷ 가족사항 및 임신 또는 실업여부 문서 발급서비스

○ 통합 웹 플랫폼을 통해 가족사항 및 임신, 실업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공식 문서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항은 복지혜택 수급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 사용자는 통합 웹 플랫폼을 통해 복지혜택 및 연금수급 상태 확인 가능

▷ 기타 서비스

○ 혼인 등본 및 재산 복원 청구, 해양서비스(선박등기부 등본 열람, 선박 등본 신청 및 발급 등)를 향후 개시할 예정

거. 영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 본격 추진 (ComputerWeekly, 2010. 3. 22.)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디지털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방법으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 정책의 실천 계획을 발표(2010.3.22)

- 전 시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통한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

◆ 브라운 총리의 주요 추진 정책

▷ 'MyGov' 포털 구축

- 영국 공식 포털(Directgov)*의 모든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언어 전환은 물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배치와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개인화된 공공 포털(MyGov) 준비
- 은행 업무, 구직 센터, 기타 공공서비스 등을 시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웹 환경 구축을 포함
- 아마존(Amazon) 스타일의 개인화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우수성을 적극 벤치마킹할 예정
- * 2004년 정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국가대표 포털로 2010년 3월 현재 월 평균 약 2,5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성공적인 이용활성화 기록

▷ 웹 사이언스(Institute of Web Science) 연구소 설립

- 영국의 공공 정보 개방 포털 구축을 담당했던 팀 버너스 리를 수장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과 웹 환경, 시맨틱 웹과 웹 2.0, 웹 서비스 등을 연구하는 연구 센터 설립에 약 3,000만 파운드 투자

▷ 20,000 파운드 이상의 모든 공공서비스 입찰에 기업들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 구축

▷ 전 시민의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전략 및 디지털 경제법(Digital Bill) 등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확정지을 예정

▷ 현대판 온라인 '뉘즈데이 북(Domesday book)*' 구축

- 기업, 개발자 및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 및 기관들의 온라인 데이터셋 구축
- * 1066년 노르만인이었던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왕이 되었을 때, 통치상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작성했던 토지대장으로 노동자 및 자유농민 수, 농기구 수, 면적, 잠재적 경제가치 등이 기록되어 중세 유럽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

너. 미국,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 (Informationweek, 2010. 4. 2.)

- 미국 정부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활성화된 기능 위주의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추진할 예정
- 기존 백악관 웹 사이트에서 최신 정책 동향과 정보, 긴급 뉴스, 대통령 연설 등 인기 자료를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연계되는 모바일 화면에 적합한 사이즈로 포맷 재구축
- 백악관은 향후 다양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각종 모바일 기기에 시민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2010년 4월 출시된 애플의 새로운 아이패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
- * 백악관은 2010년 1월부터 이미 아이폰 등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

더. 필리핀,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선거 도입 계획(FutureGov, 2010. 3. 29.)

- 필리핀은 5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필리핀 사상 최초로 전자선거(e-elections)를 도입할 계획
-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는 전자선거가투표를 확실하게 처리할 것으로 확신

◆ 주요 내용

▷ 추진 내용

- 이번 선거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8만 2,200개의 선거구 광학스캐너를 들여왔고, 다도해 지역 4,000개의 섬으로 배분
- 또한, 1,722대의 유세 및 통합 서버/프린터, 18만 640개의 콤팩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선거구마다 30개 사본의 선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종이 33만 8,750롤이 투입

▷ 교육 프로그램

- COMELEC는 전자투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자동투표 집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TV, 라디오,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캠페인 개최

▷ 기대효과

- 지리적 특성상 2개월까지 걸리던 선거결과를 48시간 내에 산출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기계 및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40억 페소(약 1,000억 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여론조사 결과 투표자들의 절반이 자동투표 집계기의 작동법을 모르고 있고, 일부 비평가들은 실행 가능성을 비판
 - 전자선거는 자동화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필리핀 국민의 71%는 전자선거가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

러. 호주, 범국가 데이터센터 전략 실행으로 약 1조 370억 원의 절감 효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 호주 정부는 2010년부터 향후 15년간 추진하게 될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전략 및 실천 계획을 발표 (2010. 3. 22.)

* Australian Government Data Centre Strategy 2010-2025,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 데이터센터 전략(2010-2025)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2008년 발표된 호주 정부의 ICT 활용 리뷰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권고 사항 이행 및 새로운 해결 전략 모색

* ICT Review : 전 호주 정부의 ICT 활용에 대한 예산, 인력, 조직 운영을 포함하여 공유 서비스, 표준화, 데이터센터 등의 현황 분석 및 정책을 제언한 정부의 공식 승인 보고서

- 호주 수도주(ACT) 안팎의 총 3만 제곱미터의 대지에 약 50여 개 이상의 공공데이터센터가 비효율적으로 구축·관리되어 연간 약 8,500만 호주달러(약 9,000억원)의 비용 발생

- ICT에 대한 정부 활용 및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주요 공공 기관의 추가적인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 및 경쟁적인 설립으로 인한 비용 낭비 방지 필요
-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수요 제기
 - 데이터센터 전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연간 총 1억 7,000만 호주달러(약 1,760억 원)중 3,500만 호주달러(약 360억 원)의 절감 효과 발생
 -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배출되는 연간 30만 톤의 탄소 중 약 13% 절감 가능

▷ 추진 경과

- 2008년 12월 구축된 범국가 차원의 관련 전문가 워킹 그룹을 기반으로 50여 차례의 민간 합동 토론회, 입법 기관 자문 및 예산 타당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완성
 - 기술 트렌드 분석,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수요 분석, 민간 산업 부문의 관련 현황 및 파트너십 수요 분석 등에 관한 개별 보고서 발표

▷ 추진 비전 및 목표

- 비전 : 비용과 에너지 사용 및 효율적 운영의 최적화를 통한 정부 업무 수요의 포괄적 범주를 수용하는 정부의 ICT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구축
- 목표 : 향후 10년~15년 안에 총 약 10억 호주달러(약 1조 370억 원)의 데이터센터 비용 절감
 - 지속가능한 경제 향상, 지역 ICT 산업 육성 및 범정부 차원의 업무 혁신 등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추진 대상 및 적용 범위

- 대상 : 호주 재정회계법(FMA Act)을 따르는 103개 부처와 공공기관 및 호주회사법 (CAC Act)을 따르는 기타 91개 공기업 및 관련 조직 모두가 본 계획을 따르도록 명시
- 범위 : 데이터센터 활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 도입, 불필요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최적의 위치 및 구축 지역 검색 등 데이터센터 관련 세 가지 영역 이행에 적용

▷ 추진 전략

- 범국가 차원의 조달 정책 수립에 따른 범정부 폐널을 중심으로 이관·조정
 - 기존 기관들의 데이터센터 이관, 계약, 자산 관리, 보안 등의 이슈를 우선 해결

- 원활한 데이터센터 장비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수립
 - 기술 보강, 전문성 강화, 혁신 마인드 체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 창출
- 데이터센터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부문의 우선 시행
 - 전력 활용의 효율성 강화, 데이터센터의 건평 및 구축비용 절감, ICT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 수요에 맞춘 데이터센터 모델 정립, 신기술 도입과 ICT 인프라간 표준화 추진 등
- ▷ 향후 추진 방향 : 5개년별 중장기적 프레임워크에 따른 전략 이행
 - 2010년~2015년
 - 범정부 데이터센터 수요 및 관련 장비와 서비스 분석
 - 공통 정보자원 통합으로의 초기 이행 지원
 - 최고 효율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표준화 추진
 -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통합 요건 마련
 - 2015년~2020년 : 기관간 공동의 솔루션과 기술 공유 및 통합 활성화
 - 2020년~2025년 : 안정된 기술, 프로세스 및 정책 마련에 따른 비용 절감

머. 미국, 부처별 ‘열린 정부’ 중점 추진계획 발표 (White House, 2010. 4. 8.)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을 위해 2009년 12월 발표한 지침에서 구체적 정책을 촉구한 데 따라, 2010년 4월 연방정부의 부처 및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

◆ 주요 부처들의 열린 정부 중점 추진계획(Open Government Flagship Initiatives)

- ▷ 농무부 : 국립산림시스템 토지관리계획규칙
 - 각 산림과 초원이 토지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규칙으로, 일반인들을 초청해 규칙 개발에 협력하도록 하고, 계획 규칙 블로그 등을 확대 사용하여 협력을 촉진할 계획
- ▷ 상무부 : 가상 커머스커넥트(Virtual CommerceConnect)

- 정부 서비스와 솔루션 접근을 간소화해 미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계획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보, 자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원스톱 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 국방부 : 가상 평생전자기록
 - 2009년 4월 9일 발표한 전자건강정보 공유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비전으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한 날부터 군복무 기간, 제대 후의 행정 및 의료 정보를 포함
- ▷ 교육부 : ED 데이터 익스프레스 중점 계획
 - ED 데이터 익스프레스(ED Data Express)는 일반인들이 교육부가 수집한 주 차원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 만들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데이터 포털
- ▷ 에너지부 : OpenEI.org
 - 오픈 에너지 인포메이션(Open Energy Information, openei.org)은 에너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참여 가능하고, 편집 가능한 진화하는 무료 위키 플랫폼
- ▷ 보건복지부
 - CMS 대시보드(CMS Dashboard) : 양방향 웹 톨로 일반인들이 쉽고 정확하게 입원환자 병원 지출부터 노인 의료보험 제도(메디케어) 지출내역까지 확인 가능
 - 커뮤니티 건강정보 계획 : 커뮤니티 의료서비스의 비용, 질, 접근성, 공중 보건에 대해 쉽게 이용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
- ▷ 국토안전부 : 가상 USA(Virtual USA, vUSA)
 - 연방, 주, 지방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날씨, 교통, 주요 인프라의 위치 및 운영상태, 연료 공급, 비상 대피소와 의료시설 이용가능성과 같은 주(州) 간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공유 계획
- ▷ 법무부 : FOIA 대시보드(FOIA Dashboard)
 - 국민들이 92개 연방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법(FOIA) 준수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웹사이트

▷ 국무부 : HumanRights.gov

- 여러 웹사이트와 많은 연방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는 인권 정보를 이 사이트에 보관하여 연방정부와 외부 협력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수행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

▷ 환경품질위원회 : GreenGov

- 대통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행정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대중의 생각을 요청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포럼, 정부기관 간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회의, 수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

▷ 연방조달청

- 도전과제 및 수상 플랫폼 : 연방정부 기관들은 열린 정부 향상을 위한 혁신적이거나 비용 효과적인 도전과제, 상, 기타 전략을 관리하기 위한 웹기반 플랫폼을 공개할 계획
- 시민 참여 플랫폼 :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점을 구축할 계획으로, 정부기관들은 이를 통해 블로그, 위키, 포럼 등과 같은 도구를 쉽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미국항공우주국(NASA)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 대중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NASA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계의 우주산업 진입 도모
- 네블라(Nebula)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 NASA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쉽게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외부 협력자 및 대중과 공유 가능

▷ 인사관리처 : 협업 및 지식관리(KM) 기술 수행

- 직원들과 일반인 및 기타 기관들이 중앙에 집중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문서관리 툴, 협업 툴, 웹 2.0 기술, 가상 세계 등의 기술을 도입

▷ 과학기술정책국 : R&D 대시보드(R&D Dashboard)

- R&D 지출 데이터를 추적하고 시각화하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고안 계획

버. 아일랜드, 새로운 온라인 맵핑 서비스 ‘맵지니(MapGenie)’ 시작 (egovmonitor, 2010. 4. 7.)

- 아일랜드는 정부기관 및 기업이 활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맵핑 (Mapping) 서비스 ‘맵지니(MapGenie)’를 시작
 - 아일랜드 전체 웹 매핑 서비스(WMS)를 통해 OSi* 및 북아일랜드 토지부동산 서비스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품질의 지도 데이터 제공
- 구축된 맵지니는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구글 맵이나 마이크로소프트 Bing (Bing) API*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웹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 Ordnance Survey Ireland : 아일랜드 국가 지도청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의 맵지니 활용 예시

▷ 정부 기관

- 도로안전 애플리케이션 : 도로안전청 (Road Safety Authority, RSA) 및 보건서비스기구 (Health Service Executive, HSE)와 협력해 웹기반 도로안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패턴 및 위치를 보여주며 피해 정도, 발생연도 및 사고유형별로 전국, 카운티 및 지역 차원에서 OSi 맵에 충돌 사고 데이터를 제공
- 웹기반 지도보기 애플리케이션 : OSi는 정부 기관의 일부 데이터를 OSi 맵 데이터와 쉽게 조합해 웹기반 지도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 토지나 부동산 권리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나 보험료 책정 및 리스크 평가 과정 개선을 위해 지리적 위치 확인 기법을 사용하는 보험 업계 등이 활용

▷ 민간 기업

- 모바일 인력 관리 : 온라인 솔루션 기업인 포스링크(ForceLink)는 모바일 인력 관리용 SaaS(Service-as-a-Service)에 맵지니를 활용
- 맵지니는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기존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전망

서. 미국, 업무혁신 및 IT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 신설(White House Executive Order, 2010. 4. 19.)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총무처(GSA) 산하에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Advisory Board, PMAB)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행정명령, 2010.4.19)

◆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 위원장

- 예산관리국(OMB)의 관리차장(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 겸 최고성과책임자 (Chief Performance Officer)인 제프리 자이엔츠(Jeffrey Zients)*임명

* 민간 의료싱크탱크 Advisory Board Company의 최고경영자 겸 회장, 경영컨설팅 기업인 Corporate Executive Board Company 회장 역임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정부의 IT 이용 및 도입을 위한 기술 응용, 고객서비스, 업무 관리 및 운영, 감사 및 재무, 인적자원 등 각 분야의 민간 CEO로 총 18명(위원장 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예정
- 임기는 총 2년으로 재임명이 가능하며,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 수행가능

▷ 주요 업무 및 역할

-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 업무 혁신을 위해 연방정부 전 분야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권고안을 제시
- 연방정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시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특히 생산성, 정부의 IT 이용 및 도입, 고객서비스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
- 대통령 정부운영자문위원회는 모든 행정부처 및 기관에게 업무와 관련한 자료 요청 가능

어. 세계은행, 경제개발 및 부흥을 위한 국가별 정보 공개 포털 오픈 (futuregov, 2010. 5. 11.)

- 세계은행(World Bank)*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생성·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정보를 공개
 - 공유할 수 있는 웹 포털(data.worldbank.org) 오픈
-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약칭으로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이며,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균형, 기술 원조 등을 제공

◆ 데이터 공개 포털의 주요 내용

▷ 추진 목표 및 주요 대상

- 아시아 지역과 기타 경제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 결정 시, 보다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를 공공 및 민간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료와 경제 개발 관련 데이터 등의 부재 및 공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현황 파악과 정책 입안의 어려움 발생

▷ 공개 데이터 종류

- 209개의 국가별 현황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정보 등 2,000여 개의 재정, 비즈니스, 의료, 인적 관리 등에 관한 데이터 셋 구축

▷ 주요 기능

- 모든 사용자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지표에 따른 국가별 데이터 분석과 활용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가능하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

▷ 기대 효과

-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유용한 지식 창출 기회 제고

저. 싱가포르, 모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용 통합 이메일(OneInbox) 부여 (channelnewsasia, 2010. 6. 15.)

-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거주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와 메일을 한 곳에 수신 받을 수 있는 '원인박스(OneInbox)' 서비스를 위한 이메일 주소를 부여할 계획

◆ '원인박스' 계획의 주요 내용

▷ 추진 목적

- 시민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산발적인 메일과 정보 서비스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시에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서비스 선진화 및 만족도 제고 추구

▷ 추진 대상 :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을 포함하여 총 500만 명으로 합산

▷ 추진 내용

- 각 거주자들에게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의 정보 및 서비스를 송신
 - 향후 전화요금 고지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의 각종 세금고지서 등을 같은 이메일로 송신하도록 서비스 확대 예정
 -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공공 아파트 구입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정보 중심으로 메일 서비스 통합을 확대·실시할 계획
 - 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여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편의 제공 예정
- 거주 시민은 본 이메일 주소를 휴대전화로도 연결하거나 문자 알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용도로는 메일 송·수신이 불가

▷ 추진 일정

- 원인박스 서비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3년 이내에 전체 거주민의 약 1/3 이상이 사용하도록 적극 시행될 예정
 -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사용 실시 예정

▷ 중점 고려 사항

- 부여된 메일주소의 해킹 등 각종 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검증 절차와 인증 시스템 확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고려 사항을 강조

5. 정보통신산업 육성

가. 미국, ICT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egovmonitor, 2010. 1. 8.)

- 미국은 ICT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주제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에 4,700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10.1.8)
 - (기대효과) ICT산업의 에너지 사용·비용이 줄어들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및 ICT산업의 경쟁력 유지
- 미국의 정보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처리·저장 및 통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성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 미국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한 프로젝트로 3개의 주제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 시연 프로젝트로 나누어짐

◆ 3대 주제 영역

▷ 장비 및 소프트웨어

- 서버 및 네트워킹 기기뿐만 아니라 장비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데이터 또는 통신 센터의 핵심 컴포넌트들에 초점

▷ 전력 공급망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버 기반 IT 및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및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 필요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끄고 켜으로써 서버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센터 및 대규모 서버 팜*(serverfarm)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50% 절감 가능

* 데이터 센터(data center)라고 불리며 컴퓨터 서버의 집합으로 전자적으로 변환된 정보의 저장, 관리 및 보급을 위한 중앙 저장소

▷ 냉각

- ICT 산업에 사용되는 냉각 장비를 현재보다 효과적이고 전력을 적게 사용하여 냉각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모색
- 지속적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팬 속도, 조정 가능한 공기 주입구, 무선 온도 센서를 채택한 새로운 동적 냉각 시스템을 개발 예정

나. 일본,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 추진 완료 (일본 경제산업성, 정보대항해프로젝트, 2010. 2.)

-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보기반(플랫폼)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한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가 2009년으로 추진 완료
 - (개요) 텍스트 중심의 정보검색이 아니라 개인생활, 비즈니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 해석할 수 있는 정보기반(플랫폼)을 실현

◆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 주요내용

▷ 목표

- 미래 정보 경제사회에서 이노베이션(innovation) 창출 환경을 확립하고, 일본 산업의 국제 협력을 향상

▷ 추진배경

- IT기반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 정보에서부터 개인 기록 동영상이나 회화, 방송영상, 상품정보나 센서정보, 생산이력, 교통이력, 지리·기후정보 등 여러 정보매체로 대상을 확대
- 정보의 이용 또한 정보가전, 차량탑재 단말, 전자태그, 공공 교통기관, 기업의 생산·유통현장 등 여러 가지 국면으로 다이내믹하게 확대

▷ 주요내용

- 다종다양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해석하기 위한 ‘차세대 검색·해석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실험 실시
- 프라이버시, 저작권 등의 제도적 과제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환경 정비
- 제도·환경의 성숙, 기술 개발을 통해 매력적인 서비스 창출에 연결되도록 이노베이션 창출 메커니즘 확립

다. 미국, IT 사업의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방 CIO 주재의 ‘TechStat’ 운영
(Informationweek, 2010. 2. 11.)

- 미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모든 IT 투자 사업의 보다 나은 효율성 증진과 예산 중복 방지 및 성과관리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협업 프로세스(TechStat) 운영·활성화 촉구

◆ ‘TechStat’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오바마 대통령의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운영에 따른 성과, 장애 요인 분석 및 기존 IT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 필요

▷ 추진 목적

- 모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IT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 일정, 추진 내용, 관련 인프라 등에 관한 1)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2) 사업별 성과관리체계 집중 관리

▷ 추진 방식

- 범정부 최상위 수준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에 따른 피드백 담보
 - 연방 CIO인 비벡 쿤드라의 주재 아래 OMB 성과관리 관련 분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해당 피드백 수렴 및 결과 보장
- ‘IT Dashboard’의 최대·최적화된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연방 IT 사업에 관한 데이터 공개 포털(IT Dashboard)의 정보와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별 이슈를 선정하고 피드백을 공지함으로써, 각 사업별 정보 공개 확대 및 정부의 통합적 관리 역량 향상

- 부처 및 기관별 이슈 발생에 따른 수시 소집으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
 - 2010년 1월 첫 회의 이후 평균 주 2~3회에 걸쳐 소집되었으며, 비백 쿤드라는 언론 발표에서 향후 더욱 다양한 사업 운영 이슈에 따른 활발한 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이슈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로 효율성 증대
 - 개별 사업 담당 부처 및 기관의 CIO와 의사결정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석으로 논의된 결과에 따른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기대

▷ 추진 경과

- 환경보호청(EPA)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무청,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주요 IT 사업 운영 부처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회의 개최 추진

라. 영국, 디지털 경제 부흥을 위한 시맨틱 웹 연구에 3천만 파운드 투자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10. 3. 22.)

- 영국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시맨틱 웹* 연구에 3,000만 파운드 (약 513억 2,910만 원)를 투자하기로 발표
 - * 컴퓨터가 웹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많은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중복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
- 영국 정부의 자금은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와 인공지능 웹전문가인 니겔 새드볼트(Nigel Shadbolt) 교수가 이끄는 새로운 시맨틱 웹 연구소(Institute of Web Science)에 투자될 예정
 - 팀 버너스 리는 2010년 1월 완성된 영국 공공정보 개방·공유 포털(data.gov.uk)구축의 총괄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
- 새로운 연구소는 영국이 시맨틱 웹을 비롯한 차세대 웹 및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민간 부문에는 태깅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의 수요를 보다 잘 파악하는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조직 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공공 부문에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간 연계와 정보 공유를 쉽게하고, 시민들이 공공 정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마. 영국, 디지털 참여 활성화를 위한 Google, MS 등 민간기업 파트너십 체결 (Race Online 2012, 2010, 3, 28.)

- 영국 정부가 추진중인 'Race Online 2012*' 캠페인을 위해 Google, MS, 통신회사 BT 등 총 9개 기업은 1차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
- * Race Online 2012 : 2012년 말까지 모든 영국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도전과제

◆ 민간 기업들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 ▷ 통신회사 BT : 'Pass IT on' 장려
 - BT의 모든 직원,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에게 'Pass IT on'을 장려함으로써 최소 10만명이 처음으로 온라인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전자업체 Comet : 소외계층에게 저가의 컴퓨터 제공
 - 노인들을 위한 사내 온라인 교육훈련 실시, 소외계층에게 저가의 컴퓨터 제공
- ▷ Google : 재래식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해 'Race Online 2012' 홍보
 - 인터넷 이용 가이드인 'Simple Guide'를 제작하여 오프라인 배포 및 'Race Online 2012' 유튜브 사이트를 제작하여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독려
- ▷ McDonald's : 맥도널드 매장에 Wi-Fi 구축
 - 8만 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 및 가족에게 'Pass IT on'을 유도하며, 매장내에 Wi-Fi를 구축하여 IT 사용 기반 구축
- ▷ MS : 자원봉사 및 행사 개최 등을 통해 'Pass IT on' 캠페인 전개

- 자사의 32,000개 파트너들에게 'Pass IT on'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원봉사 및 행사등을 개최하며, 700개 이상의 Microsoft Academy에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Pass IT on' 캠페인 전개
- ▷ 영국 가격비교 전문사이트 Moneysupermarket.com : 처음으로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 통신업체 Sky :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무료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 ▷ 방송사 Skype : UK 온라인 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및 장비 제공
- ▷ 인터넷 전화서비스 업체 TalkTalk : UK 온라인 센터에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 할인 혜택 부여

바. 캐나다, 디지털 경제 전략 도출을 위한 국가회의 출범 (Canada News Centre, 2010. 5. 10.)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디지털 경제 전략을 도출하는데 정부와 민간부문, 학계와 국민사이에 합의를 얻기 위한 국가회의(national consultations)를 발표(2010.5.10)
 - 회의를 통해 민간부문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부문이 디지털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며, 글로벌 리더가 될 미래의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 영역을 파악

◆ 주요 내용

▷ 배경

- 캐나다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국가였으며, OECD 회원국 중 브로드밴드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섰으나, 기업들은 혁신적인 ICT 개발, 채택 및 사용에서 국제 경쟁업체들보다 뒤쳐진 상태
- ▷ 목적 : 캐나다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리더십을 갖추고 전략을 도출
 - 협업 가능한 영역과 해결해야 한 우선과제, 기존의 연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기회를 파악

▷ 회의일시 및 장소: 2010.5.10 ~ 7.9, 온라인(www.digitaleconomy.gc.ca)

▷ 주요 안건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 능력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ICT 산업 성장
- 디지털 미디어: 캐나다의 디지털 콘텐츠 혜택 창출
-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구축

▷ 기대효과

- ICT 부문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의 사이버 보안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 업계, 학계, 콘텐츠 개발자, 기술 전문가, 연구자, 정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캐나다의 디지털 경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방법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추후 계획

- 2010년 7월 회의 종료 후, 정부가 검토하고 이를 이용해 국가 디지털 경제 전략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

사. 이집트 정부,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한 '모바일앱스아카데미' 출범 (The NextWeb, 2010. 6. 1.)

- 이집트 정보기술산업개발청(ITIDA)*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모바일 앱스아카데미(MobileAppsAcademy) 프로그램 추진

*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Agency

- 모바일 업체 보다폰(Vodafone)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 프로그램은 이집트의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주요 내용

▷ 혜택

- 모바일앱스아카데미(MobileAppsAcademy)의 회원이 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개발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활동 가능
 - 이집트의 최첨단 시설 및 PC와 고속 인터넷 연결 서비스가 갖춰진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의 최대 기술 클러스터에 접근 가능
 - 위젯(Widget), 심비안(Symbian), 아이폰(iPhone) 애플리케이션 개발 훈련 참여 및 지원
 -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세미나 및 워크숍 기회 제공
 - 창업 조언 및 컨설팅 지원
 - 수익 공유 기회가 있는 앱 스토어에 본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공개 기회 제공 (개발자가 70% 수익 보유)

▷ 자격요건 : 33세 이하 이집트인으로 소프트웨어 및 웹 개발 유경험자

▷ 신청 방법 : 모바일앱스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향후 추진 일정

- 합격자 발표 : 2010년 8월 31일
- 교육일정 : 2010년 9월 13일 ~ 2011년 2월 1일
- 평가 및 보상 : 2011년 3월 10일

6. 정보보호 및 보안

가. 영국, 모바일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시제품 발표(egovmonitor, 2010. 2. 11.)

- 영국 내무부 디자인 및 기술 연합(Home office Design and Technology Alliance)은 모바일폰 사용자 보호를 위한 3가지 시제품을 개발
 - 기술전략 위원회(TSB)로부터 지원을 받아 내무부 디자인 및 기술 연합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인 모바일폰 보안 도전과제(Mobile Phone Security Challenge)의 일부로 시범 원형을 개발

-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모바일폰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비접촉 전자 지불을 위해 모바일의 무단 사용을 제제하기 추진
- 3가지 시제품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0*’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설계 및 기술 연합과 설계 위원회는 업계가 3가지 보안 기술을 채택해 고객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

* Mobile World Congress 2010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18일까지 열리며 전세계 210여 개국, 1000여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및 장비업체 연합기구가 주최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정보통신 전시 및 컨퍼런스

◆ 3가지 시제품

▷ 아이-미고(i-migo)

- 모바일 기기가 도난 또는 분실시 경보음이 울리고 모바일기기는 자동으로 잠금장치 실행
-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 가능

▷ 타이(tie)

- 모바일기기를 SIM카드에 연결시켜주며 패스워드 및 암호화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
- 도난된 모바일기기는 다른 SIM카드 그리고 저장된 패스워드, 브라우징했던 웹 사이트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장된 연락처에 접근 불가능

▷ 터치세이프(TouchSafe)

- ‘M-Commerce’ 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근거리 무선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사용
- * 근거리 무선통신은 13.56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아주 가까운 거리의 무선통신을 하기위한 기술로 교통, 티켓 등 여러 서비스에 응용 가능

나. 덴마크, 안전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일 디지털 서명 시행(eGovmonitor, 2010. 2. 15.)

- 덴마크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이용 시 디지털 서명(NemID) 사용을 의무화
- (배경)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PIN 코드 발급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매년 지출됨에 따라 정부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필요

◆ 덴마크의 디지털 서명 주요 내용

▷ 개요

- 덴마크 중앙정부, 광역 및 지자체는 다양한 사용자명(username)과 암호(password) 코드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서명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에 합의(2010.1.12)
-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최대한 사용이 용이한 디지털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추진주체 : 지자체, 광역 정부 및 다양한 정부 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부공동 협력운영위원회'
- 대상 : 덴마크 중앙정부, 광역 및 지자체

▷ 주요 일정 계획

- 2010. 7. 1 : 새로운 디지털 서명 NemID 발효
- ※ NemID는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을 위한 SSO(Single Sign-On)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banking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에도 사용가능
- 2010. 11. 1 :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접근 편의를 목표로 중앙정부, 광역 및 지자체간 공동 사업인 'eDay 3' 시작
- 2010년 말 : 덴마크 내 모든 인터넷 banking 고객들이 NemID를 사용함으로써 새롭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서명 구현
- 2011. 3. 1 : 정부 기관들은 암호 코드 발급을 중지
- 2011. 8. 1 : NemID를 사용할 경우에만 공공 전자 서비스에 접근 가능

다. 싱가포르,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발표 (싱가포르 통신개발청 (IDA), 2010. 3.)

- 싱가포르 정보통신문화부*는 공공, 민간 및 시민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I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계획 발표

* Minister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 (추진 배경) 2008년 발표된 제2차 정보통신 보안 종합계획(Infocomm Security Masterplan 2, MP2*) 추진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수립

* 정보통신 보안 종합계획 1(2005~2008)의 후속계획으로 2008~2012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에 초점

- (추진 목표) 국가 인터넷 및 공공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서비스 증진, 공공·민간부문과 시민들의 보안역량 강화

◆ 사이버 보안 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1) 인터넷 인프라의 보안성과 회복력 향상

- 조기 경고를 발령하고 적절한 사전조치를 수행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인터넷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할 목적

가. 업계 규약(Industry Code of Practice)

- 국제기준과 모범사례에 맞춰 조정될 본 규약은 2010년 3/4분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기존 및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통제 및 성과 제시

나. ISP들 간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among ISPs)

- 정보통신 보안 준비성 및 대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통신개발청(IDA)의 조정을 통해 ISP들 간의 정보통신 보안 정보 공유

(2) 공공부문 보안 역량 확대

-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보안 역량은 정책, 기술적 통제를 통해 확대
- 보안 역량 강화로 비즈니스 분석 툴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의사 결정자에게

제시, 조기에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고 조치 가능

(3) 정보통신 보안 인식 제고

- 사이버보안인식연합(Cyber Security Awareness Alliance)은 'Go SAFE ONLINE'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용자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개인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
-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와 함께 학생들이 교육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건강, 안전, 보안을 배울 수 있도록 '가상 사이버 보안 파크' 포털 개발 진행 등

라. 미국,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지침 발표 (Govtech, 2010. 4. 22.)

-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강화를 위해 연방정보 보안관리법(FISMA*)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보고체계 강화 예정
-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 연방정부의 정보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 연방 운용 및 자산을 지원하는 정보 자원에 대한 정보보호 통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제공
- 미국의 예산관리국(OMB)은 정부기관이 FISMA에 따라 CyberScope*를 활용한 보고서 제출 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지침 제시
- * FISMA 보고를 위한 자동화된 온라인 데이터수집 틀
- 본 지침들은 각 기관이 2010년 11월 15일까지 제출 보고서에 반영하고 3분기부터 CyberScope에 적용될 예정

◆ 신규 지침 내용

▷ 보안 관리 툴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집

- 보고서 내 데이터는 별도의 보고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 관리 도구로부터 직접 수집

- 데이터에 포함될 정보
 - 물품명세서(Inventory)
 - 시스템과 서비스(System and Services)
 - 하드웨어(Hardware)
 - 소프트웨어(Software)
 - 영구 연결(Eternal Connection)
 - 보안 교육(Security Training)
 - 계정 관리 및 접근(Identity Management and Access)

▷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활동 벤치마킹

- 각 기관이 사이버보안 활동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소규모(100인 이하) 연방정부 산하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CyberScope에 게시되는 사이버보안 활동 문의사항에 대응

▷ 인터뷰를 통한 사이버 보안활동 조사

- 정부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활동을 조사, 그 결과를 2010년 FISMA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

마. 미국 미시시피 주, '데이터누설통지법' 가결 (eSecurity Planet, 2010. 4. 16.)

- 미국 미시시피 주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데이터 누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곧바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데이터누설통지법(Data Breach Notification Law)' 가결
 - 미국에서는 미시시피 주가 46번째로 이런 형태의 법률을 가결하였고, 헤일리 바버(Haley Barbour) 주지사가 2010년 4월 7일에 서명한 의회법안 583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 이 법률은 미시시피 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누설할 때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명시
 - 아울러 적절한 법집행 당국에 데이터 누설을 보고하고, 누설의 범위와 성질을 특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내부조사를 개시하는 것도 의무화

- 또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주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번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계좌정보 등 특정 데이터가 누설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명시
 - ※ 이로써 데이터 누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누설통지법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주는 앨라배마·켄터키·뉴멕시코·사우스다코타 등 4개
- 전 미국에서 가장 명확하고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 통지법과는 달리, 미시시피 주 신법에서는 데이터 누설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통지로 끝내는 것을 인정

바.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개정으로 백악관의 사이버 권한 증대 (GCN, 2010. 6. 2.)

- 미국 연방 사이버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개정안 통과(2010.5.28)
 -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 대통령실*에 사이버공간보호국(NOC**)을 구축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책임자를 둘 예정
 -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National Office for Cyberspace
- (기대효과) 백악관은 정부기관 내 IT 보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

◆ 각 기관의 역할

- ▷ NOC의 역할 : 연방 사이버보안 실무 이사회(Federal Cybersecurity Practice Board)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책과 절차 도출
 - 기본적인 사이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통제
 - 보안 통제를 위한 효과성 측정
 - 보안 통제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상업적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기준
 - 보안 통제의 결점에 대한 해결방법
 -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업계 및 외국들과의 협력

▷ NOC 책임자의 역할

-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기관에게 운영상의 도움을 줄 중앙 연방정보 보안사고 대응센터를 운영
- 책임자는 정부기관 정보보안 예산을 검토하지만 행정관리에산국(OMB)에 제출되기 전 정부기관의 연례 예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승인권한만을 가질 것

▷ 정부기관의 역할

- 정부기관들은 중앙 연방 정보 보안사고 대응센터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버 조사 공동 실무팀(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과 정부기관 감찰관에게 보안 사고를 통지
- 지속적으로 정보 인프라를 모니터링, 보안 통제 시험 등을 수행

사.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강조 (whitehouse, 2010. 5. 27.)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의 현황과 지향점을 공개·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주요 내용으로 사이버보안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5.27

- 안보전략의 '4개 기둥'중 '안보'의 주요 카테고리 일부로 사이버보안 및 보호 관련 내용 포함

*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 국제협력(international order)

◆ 新국가안보전략의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

▷ 국가안보의 주요 부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강조

-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및 국가경제에 위협을 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와 테러, 해킹 등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관련 인력과 기술 부문 투자 : 주요 공공 및 산업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원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선정

- 공공, 민간, 학계 등 관련 부문 파트너십 강화 : 국제적 파트너십을 포함한 포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안 관련 협업 체계 강조

8. 정보통신윤리

가. 인도, 전화 및 인터넷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pcworld, 2010. 2.)

- 인도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에서의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중앙관리 모니터링 시스템(CMS*)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에 의해 발표

* Centralized Monitoring System

- (배경) 2개의 호텔, 기차역,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등 뭄바이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를 통해 필요성 인식
- 중앙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6월 시범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 요청
- 2009년 초 2008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8)을 시행하여 통신을 차단 및 모니터링하는 정부 역량 강화
- 중앙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중앙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어 중앙 및 주차원의 집행 기관이 통신을 차단 및 모니터링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입 없이도 정부기관을 통해 전화번호를 전자적으로 직접 획득 가능
- 통화 데이터 기록의 분석과 데이터마이닝* 기능을 갖추고 있어 통화 세부사항, 위치 세부사항, 목표 전화번호의 기타 정보 등을 획득 가능
- *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 현재 인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은 많은 단계에서 수동 개입 요구되지만 현재 계획 중인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통신을 차단 및 모니터링 가능

나. EU,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2010 개최 (Insafe, Europa, 2010. 2.)

- 유럽의 INSAFE*는 연례행사인 e-안전 주간(E-Safety Week, 2010년 2월 8~12일) 및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2010'(2월 9일)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들을 개최

* 유럽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 센터(European Safer Internet Centres)의 네트워크

- 7회를 맞는 2010년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에는 “글을 올리기 전에 생각하자(Think B4 U post)”는 캠페인을 시작

◆ Safer Internet Day

▷ 개요

- 전 세계의 어린이와 젊은이들 사이에 온라인 기술과 휴대폰의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월에 개최
- 2004년 첫 해 이래로, 전체적인 인식의 증가와, 인터넷 안전 분야의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더욱 높은 참여율, 높은 수준의 미디어 관심과 더불어 참석자들이 꾸준히 증가
- 2009년에는 2월 10일을 전후로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과 기자회견에서부터 교육자들과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와 록 콘서트에 걸쳐 다양한 행사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개최

▷ 2010년 주요 내용

- 주제 : Think B4 U post!
- 참가자 : 영국 등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지역, 국가, 온라인 행사들을 개최
- 주요 행사
 - 유럽 위원회(EC)는 사진·멀티미디어 전시회 「“분신”과 “친구 신청
 - 온라인 정체에의 반영(“Alter ego” and “Friend request” - a reflection on online identity)」 개최
 - Facebook 사이트 ‘Safer Web’, 트위터 사이트 #saferweb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도 참여

- 영국 e-safe education.co.uk(www.esafeeducation.co.uk)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안전주간 동안 관련 조연을 제공하며, 부모들은 e-safe Protect@Home 소프트웨어의 시험판 사용 가능

다. 영국, 온라인 신용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운영 (silicon, 2010. 2. 17.)

- 영국의 경제혁신부(DBIS)*는 불법적인 온라인 신용 사기 웹 사이트를 조사·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에 430만 파운드(약 77억 원)를 투자하기로 발표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불법 온라인 신용 사기 방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불법 온라인 신용 사기로 인해 매년 약 35억 파운드(약 6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발생
- ▷ 추진 목적 : 각종 불법 온라인 신용 사기 웹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 추진 내용 : 온라인 사이트 조사를 위한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 공정거래국(OFT) 내에 사이버대응팀(cyber enforcement team) 신설 : 온라인 서비스, 티켓 판매, 신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불법 내용 조사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연구소 설립 : 불법 범죄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OFT 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사이버대응팀 부설기관
 - *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전자 증거물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존 방식의 혁신적인 범죄수사 기법
 - 사이버범죄 추적에 능한 전문 인력 양성 : 현재 약 3,000여 명의 정부 표준거래 관리자 중 300명을 중급 이상의 사이버범죄 추적 역량을 갖도록 교육·훈련

라. 중국,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ChinaTechNews.com, 2010. 2. 24.)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T*)는 정부 주도로 포르노 콘텐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工业和信息化部

- (주요내용) 기업 및 개인 도메인 네임 신청자들에게 웹사이트 책임자 얼굴의 컬러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 일련번호 및 접근 장치를 발급

◆ 주요 내용

▷ 추진 목적

○ 인식 제고

- 도메인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위협을 인식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 강화

○ 도메인 시스템의 안전방호와 응급업무 강화

- 도메인 시스템 운영 보호와 안전관리제도 정립, 책임제를 구체화, 도메인 시스템 구조를 최적화, 중복백업 강화
- 표준에 따라 각 항목의 안전방호 조치를 구체화, 정기적으로 도메인 시스템에 대한 검사, 평가, 시정을 진행
- 도메인 보안 모니터링 수단을 수립, 각종 보안사건의 조기 모니터링 능력제고
- 로그 저장업무를 확실히 하고, 안전감사 강화 및 안전사건에 대한 추적능력 향상
- 본 업체의 도메인 시스템안전 특별 응급대책을 제정·개선, 도메인 안전사건 정보제출 업무 진행, 비상훈련 조직·진행

○ 공중 도메인 안전기술 플랫폼 설립 및 개선

○ 도메인안전 표준화와 자체혁신 업무 추진

○ 도메인 안전보장업무의 감독과 검사 강화(MIT 통신보장국)

- ※ 인터넷 도메인 시스템의 안전보장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2010.1.30, CNNIC)

▷ 요구 사항

- 도메인 네임 신청자들은 신청 자료를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로 제출(팩스,이메일)
- CNNIC가 신청 서류를 5일 안에 받지 못하거나 신청 자료 검토 결과 자격이 없을 시에는 신청 도메인 네임 삭제

마. 영국,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아동신고 버튼 요구 (CEOP, 2010. 3. 9.)

- 영국아동보호센터인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는 모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에게 어린이가 한 번의 클릭으로 즉각적인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튼(CLICKCEOP)을 만들 것을 요구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 영국 아동인터넷안전 위원회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의 일원

◆ CLICKCEOP

▷ 배경

- 2009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Facebook) 관련 사고신고는 267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3%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대화(Grooming*) 관련 신고
- *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친절하고 다정 다감한 척 유인하는 행위
- 그러나 이러한 신고 중 81%는 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

▷ 추진경과

- 2006년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위협에 처할 때 언제나 사용가능한 온라인 신고 버튼으로 시작하여, 영국 'MSN 라이브 메신저'와 'AOL BEBO' 등 수백 개의 사이트들이 채택
- 버튼을 통해 CEOP의 전문 경찰 팀에 신고하는 아동의 신고 건수는 매달 500건 이상이며, 이 중 아동이 급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는 하루 4건으로 집계

▷ 기능 및 역할

- CEOP의 자체 전문가 팀들뿐 아니라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Childline, Beatbullying, GetSafeOnline과 같은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지도를 어린이들에게 제공

제6절 정보화 관련 판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1. 전자정부실현

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 59조제3호는 합헌이라고 본 사례(헌법재판소3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위헌소원/합헌])

[합헌의견]

○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여부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됨에 따른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불공정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후보자 등에게만 한정하여 특정 유형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 및 익명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 등의 반론 허용 등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 혼탁선거 및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고, 선거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사실상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비추어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의 정도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위배 여부

-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달리 전적으로 타인(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게시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또한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려우므로, 유권자에 비하여 신원확인이 용이하여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헌의견]

○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 인터넷 선거운동은 종래의 전통적인 선거운동방법에 비해 선거의 불공정을 야기할 위험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이므로, 다른 선거운동방법에 비해 그 제한의 한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다른 선거운동방법보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불공정의 폐단이 적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금지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 공직선거법은 선거폐해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로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제82조의5 제1항, 제4항 등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어 피해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 표현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에 따른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법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 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10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3조, 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등 그 전후의 조항들과 구분되므로, 이 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률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 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 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방지 조치 태만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손해배상(기)])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그런데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 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사진작품을 무단 복제·전시·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방지조치 태만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이다.
- 라.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손해배상(지)])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저작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한다.

4. 정보보호 및 보안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 사안에서, 청구인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 사안에서, 청구인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5.17.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2. 선고 2007두 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보장,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어느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 조직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 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5. 정보통신윤리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10오1 판결 【상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3.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 선고 전인 2008. 3. 14. 원판결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찍힌 피해자 인영이 고소장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이를 나머지 상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참고문헌〉

- 남효순·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 방동희, 최근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전자정부법제연구 제1권, 행정자치부, 2006
- 방동희,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2권 제2호2007
- 방동희·오강탁,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42호, 2009. 4.
- 방석호·정상조,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9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하), 박영사, 2009

<http://www.moleg.go.kr/>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www.scourt.go.kr/>

<http://www.ccourt.go.kr/>

<http://www.lawtimes.co.kr/>

<http://www.loc.gov/>

<http://thomas.loc.gov/>

<http://www.supremecourtus.gov/>

<http://www.uscourts.gov/>

<http://supct.law.cornell.edu/supct/>

<http://www.parliament.uk/>

<http://www.ogc.gov.uk/ogc/ogchelp.nsf/pages/redirect.html>

<http://www.moj.go.jp>

<http://www.courts.go.jp>

<http://www.ip.courts.go.jp/>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http://www.kantei.go.jp/foreign/it_e.html

<http://www.manaboo.com/index.htm>

<http://www.legifrance.gouv.fr/>

<http://www.parlement.fr/>

<http://www.conseil-etat.fr/>

<http://www.courdecassation.fr/>

<http://www.bundesgerichtshof.de/>

<http://www.bundestag.de/>

<http://www.bmj.bund.de/>

<http://www.scc-csc.gc.ca/>

<http://www.parl.gc.ca/>

<http://www.crtc.gc.ca/eng/welcome.htm>

<http://www.wipo.int/>

<http://www.oecd.org>

http://www.oecd.org/topic/0,2686,en_2649_37441_1_1_1_1_37441,00.html

<http://europa.eu.int/>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http://www.google.co.kr>

<http://www.westlaw.com>

<http://www.findlaw.com>

〈참여 연구원〉

김현곤(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단장)

박정은(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장)

이규정(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 연구위원)

최인선(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평가분석부 책임연구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전공 법학석사)

2010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2010년 7월 인쇄

2010년 7월 발행

- 발행인 : 김 성 태
-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
NIA B/D
TEL : 2131-0114
- 인 쇄 : 신생용사촌
TEL : 02-426-4415

<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